

인권정보자료실
NSL1.101

2004년도

국가보안법 세미나 자료집(I)

2
0
0
4
년
도

국
가
보
안
법

세
미
나

자
료
집
(I)

인
권
운
동
사

인권정보자료실
NSL1.01

국
가
보
안
법
팀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팀

2004년도

국가보안법 세미나 자료집(I)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팀

차례

1부

-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백승현 변호사) /5

2부

- 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분단과 전쟁의 결과물로서 국보법(강정구 교수) /10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국가보안법 체제의 성립과 몰락-(장상환 교수) /16
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과 지킨 것(정영태) /55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 변호사) /65
식압과 이탈-국가보안법과 문화(김훈 시사저널 편집국장) /83

3부

-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김민배 교수) /91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3항의 본질(인권운동사랑방) /100
국가보안법 7조란 무엇인가(인권운동사랑방) /115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장호순 교수) /119
국가보안법 폐지론-제7조를 중심으로-(김종서 교수) /142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안영도 변호사) /154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박성호 변호사) /165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활동과 그 통제방안(장주영 변호사) /174
국가보안법 구속 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강금실 변호사) /181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등(법무부) /194

4부

- 아시아의 국가보안법-국가안보와 민중안보(빅토르 카루난) /210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및 국가안보(마가렛 블랜차드) /221
국가안보, 의사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원칙들-요하네스버그 회의 결과(산드라 콜리버) /232
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제(장호순 교수) /245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외활동 방지법 /252

5부

- 전향제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의 사생아-송두울 교수에 대한 '전향 강요'를 보며(최정기 교수) /262
수구언론의 마녀사냥-송두울교수 관련 신문보도 분석(김은주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장) /269
감옥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김대중 정부, 보안관찰법 평가(박지현) /282

6부

- 창립선언문(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29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하여(이진우 변호사) /29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행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법률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장악하거나 국가를 번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 ②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 1. 헌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 2항, 제 338조 또는 제 340조 제 3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2. 헌법 제 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정된 사물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항,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기밀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헌법 제 115조, 제 119조 제 1항, 제 147조, 제 148조, 제 164조 내지 제 169조, 제 250조 내지 제 180조, 제 192조 내지 제 195조, 제 207조, 제 208조, 제 210조, 제 250조 제 252조, 제 253조, 제 333조 내지 제 337조, 제 339조 또는 제 340조, 제 1항 및 제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협박, 협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5. 헌법 제 214조 내지 제 217조, 제 257조 내지 제 259조 또는 제 262조에 규정된 행을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불품을 손괴, 은닉, 위조, 번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 1항의 제 1호 내지 제 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항 제 5호 및 제 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일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 ①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일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발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하거나 협외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삭제 (91.5.31)
-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 ⑤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형고인의 구인·유치)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구속명령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관할서 기타 적법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 3조 내지 제 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 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검사,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령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봉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표정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 ① 제 21조의 경우에 입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자와 사법관 등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관할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조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여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 2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관사는 군사법원판결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법적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를 삭제한다.
- 3. 국가보안법 제 3조 내지 제 9조
- 부칙 제 2항 제 3호를 제 4호로 하고, 동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령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 제

(개정 91.5.31)

제7조 (선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선양, 고무 등)을 선전 또는 찬양에 동조하거나 국가보안권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 1항, 제 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인,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 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외환·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외환,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언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개정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개정 91.5.31)

제9조 (권의제권)

①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옹호, 반역,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보, 화합, 통신, 언약을 위한 정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권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법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⑥ 삭제 (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법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복수기중)

이 법,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 또는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림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 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2항 내지 제 5항, 제 4조 제 1항 제 1호 중 형법 제 94조 제 2항, 제 97조 제 99조, 동한 제 5호 및 제 6호, 제 2항 내지 제 4항, 제 5조, 제 6조 제 1항 및 제 4항, 제 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불수·추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불수한다. 다만, 이를 불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기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제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외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백승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국가보안법은 합헌성과 법적 정당성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한 위헌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상충성,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도 상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조항에 배치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전문.4조.66조)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을 전제로 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규정한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2) 평등의 원칙 침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행위를 누가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 여부가 가려지게 될 뿐 아니라 내심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3)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 — 죄형법정주의는 무슨 행위가 처벌될 행위인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여 개인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며 국가행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로 우리 헌법은 이를 헌법의 기본 정신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 후문)

나) 기본원칙의 적용 —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행법의 부인, 형벌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그리고 유추해석의 금지 등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니다.

이 중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은 형법법규는 가장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명확성의 원칙—불확정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해석 상 차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는 형법법규가 기본권의 개별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처벌할 가치가 없는 행위를 처벌하거나 형벌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최정성의 원칙)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고무관양 등 불확정 개념으로 정죄되어 있어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7조라 할 것입니다.

제7조는 먼저 친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여 이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 기준을 담기 힘들어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인 소견에 좌우되게 되어 앞서도 말한 유추해석용 금지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게 되는 것이다.

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도 불분명합니다. 즉 행위에 대한 평가유형은 너무나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포괄하기 힘들습니다. 장권의 정당성이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 반국가단체(북한)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남한을 이롭게 하는 한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는, 북한의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경우와 월간자의 월하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하고 유행화하기가 힘들고 판단이 엇갈리는 행위 유형을 일반 국민이 항상 정확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되는 것이며, 장권 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항상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자유가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반입이 허락되었던 책을 식방된 뒤 다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처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는 책을 운동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에서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표적인 이적 표현물로 손꼽하던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4월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라) 적정성,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㉔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조 내지 제 8조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 제 3조 내지 제 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 3항 중 "부칙 제 2항"을 "부칙 제 2항(제 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㉕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㉖ 물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 2조 중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 11조"를 "국가보안법 제 15조 제 2항 및 제 22조"로 한다.

㉗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㉑ 구형법 제 2편 제 2장 내림에 관한 죄, 제 3장 외림에 관한 죄, 구국법경비법 제 32조 제 33조, 구해안경비법 제 8조의 2, 제 9조, 구비상사태외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 2편제 1장 내림의 죄, 제 2장 외림의 죄,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㉒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㉓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㉔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환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㉑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㉒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정애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 누구나에게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태복만을 거저도록 하여 왔습니다. 결국 평화적인 남북교류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냉전질서 아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러는 큰 전체에서 볼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국가보안법 응호론(합헌론)에 대한 비판

1)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 조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 조건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때에 그 인정상이나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다원성과 각 개인의 자유 보장을 그 장점으로 하는 자유민주제 사회이고 자유민주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역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남북대치 상황을 이유로 북한인이 아닌 실제 대한민국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엔도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로 내세운 남북대치상황을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더불어 냉전질서 때문에 불단원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불리한 여건 아래 있지만 1990년대 초반 이미 사상을 이유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만에는 심지어 모택동주의를 기반으로 한 결사가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2)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전복 북한이 변하지 않는에 이백하는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통제체도가 있음이 우리 사회의 통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공산당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의가 있기도 할

— 국가보안법은 재판적인 구성요건 보다는 “국가의 존립안건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라든지 “목적으로” 등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므로써 행위형법 원칙이 무너지고, 심정형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재판적 위협성 등으로 처벌 여부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 동국이 추단하는 내심의 의사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실제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추단할 수 있고 심지어 행위자의 목적이 추정되므로써 피의자(피고인)는 자신에게 국가체제를 해할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수사기관(공소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상의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파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 개별 구성요건에 들어가서도 예비 음모의 광범위한 처벌 등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침해라고 인정할 만한 많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4) 상충성

현재의 남북관계는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지만 1991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나라는 이미 1989년에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국가보안법 상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정려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주민들기)

5) 중북성

또 우리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내란죄, 군반란죄, 외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조 반국가단체—87대헌, 114조 범죄단체구성, 목적수행—형법상 죄의 기중처벌, 5 지원금품수수—4조의 행에 대한 공벌, 잠입밀출—92의원, 98간첩, 예비음모

2. 국가보안법의 조항의 개별적 검토는 생략합니다.

나

자유민주정 아래에서도 공산당이 활동하는 예는 많습디다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산당이든 어떠한 정당이던 헌법과 정당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서독에서는 이 문제를 결사범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 국가보안법 폐지 경우 안보 약화

이런 체제가 그 체제의 최대 장점을 유보하고 포기할 때 그 체제의 장점은 약화되고 따라서 안정성은 당연히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사회의 최대장점은 사상의 자유로운 보장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될 때 가장 그 체제의 안정성이 높은 것입니다.

5)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헌법상 영토 조항과 배치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전문, 4조, 66조)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을 전제로 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규정한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6) 선진국에도 유사법제가 있다

소위 선진국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예는 상량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상 자체를 제약하는 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국가보안법과 일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더라도 이는 1950년대 매커시즘이 유행한 냉전 시기였고 그 후에 모두 사문화 되었다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 있어 간첩죄나 반역, 치안방해 및 파괴죄는 우리 형법상의 유사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비교될 것 상권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친북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규제법은 1950년대 냉전과 매커시 선동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대 들어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와 비슷한 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독의 형법과 결사범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3. 국가보안법의 언혁과 적용을 통하여 본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의 기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적의세력의 무장폭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시국 상황을 기반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던 것으로 일종의 헌시법 적인 성격이었으나 분단 상황에서 상시적인 법률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더 기술적 가면 이 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거의 베껴다 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2) 개정 과정

이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한시적 정격을 가지고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그 후 계정을 거듭하며 그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러한 국가보안법의 강화는 특히 5.16 이라는지 5.18. 등 정변(쿠데타) 직후 비상입법기구에서 이루어진 경우 많습니다.

3) 적용과 역기능

가. 정권안보에 의음

정권안보에 이용된 예가 너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던 현 대통령의 예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합니다. 내란으로 정권한 세력이 내란 정권에 반대한 세력을 오히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를 죄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 이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안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한 세력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반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때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민주정치를 방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도전하는 소위 정적을 구속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민주화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유와 그 생각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표현, 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고 그 자의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다. 더구나 이러한 현재 결정 이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으나 위 문구 역시 추상적이고 애매하며 다의적인 것으로 추상적이어서 문체인 조항에 다시 추상적인 문구를 더하였다 하여 애매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최형법정주의를 위배한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 후 법원은 위와 같은 이례표현물의 정을 아는 것은 미필적 인식으로 출판하며 제 7조 5항의 경우 목적은 이례표현물을 취급하는 것 자체로 추정된다고 (반증이 없는 한) 판시하고 있는 행편입니다.

라. 실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그 전과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기의 차이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속자 수는 오히려 늘기까지 하였습니니다.

7. 결 론

결국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의 개폐를 통하여 그 역기능을 차단하고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것이고 이와 같은 개폐는 국제인권규범에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통일과 남북한 사이의 평화 정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북한에 관한 국내 법체계의 충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기는 지식과 정보가 그 사회의 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상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는 창조성의 총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상의 검열이 가능한 사회는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창조성은 억제될 것에 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던 지난 50년이 냉전으로 인하여 민족이 분단된 50년이라면 앞으로의 50년은 이를 극복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은 50년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국민의 의사가 아직 진면폐지하지는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 7조 주 고 무, 관양이나 이례표현물 제작, 이적단체 구성 등 과거 제 10조 불고죄외의 폐지의 부분부터라도 삭제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체계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률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통일 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독 공산당의 주신이 민사당(PSD)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7) 국가보안법 악용은 잘못된 정치 탓이지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느 형도는 사실이나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용을 피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상이나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고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세력을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는 남한의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은 정권의 독재성이나 실정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기판을 이용하여 양자를 연계하는 고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딱지만큼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5.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1) 우리는 이미 세계인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 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보고서가 1992년 비엔나에서 상의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나라의 인권현실 중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잠적적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 그 후 유엔인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5년 11월 제 4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던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이미 우리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규약-b규약 19조)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기로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한국의 특수상황이 국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인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자유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외국의 예

1) 대만의 예-대만의 경우 우리의 것과 같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1987년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꼈다하더라도 처벌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실제 정치적, 양심수가 없습니다.

2) 독일의 예-서독에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체계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률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통일 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독 공산당의 주신이 민사당(PSD)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 해적상의 제한으로 역기능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가.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점은 해적 상 자의성을 방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는 1990년의 현재 결정과 그 후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1990년 현재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5항의 개념 내용이 다의적이고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적 상의 제한을 가한다는 전체에 대해 한정합헌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범문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을 인정할 이상 "불명확에 의한 무효"라는 최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효가 선언되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형법규에 최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등 그 적용기관을 신뢰하지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분단과 전쟁의 결과물로서 국보법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 정 구

I. 반역사적인 분단과정: 분단5단계설을 중심으로

1) 지리적 분단(45년 8월)

: 미국이 일방적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분할점령을 결정하여 일반명령 1호로 공포, 소련의 추후 동의

: 동시에 베트남도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은 중국, 남은 영국군 점령으로 양분시킴

2) 이념적 분단(46년 1월 이후)

: 친일파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으나, 미국의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왜곡으로 반탁 파동 확산

: 압도적 좌파이데올로기가 약화, 친일파문제가 희석화되면서 반탁=애국, 친탁=매국의 왜곡 담론 조성

: 해방공간 좌익이념의 압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① 1945년 6월 미국무성 정책보고서 :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이주 용이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분석

② 1946년 남북한 방문한 투루만의 특사 Pauly 보고서는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공산화되기 쉬운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고하고 귀속재산의 미국귀속권을 주장할 것을 역설

③ 1946년 8월 미점령군에 의한 8,45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본주의 14%(1,189), 사회주의 70%(6,037), 공산주의 7%(574), 모른다 8%(653)의 선호도를 보여주어 좌익이념의 선호도가 무려 77%

④ 주요정당의 강령

우익인 입장까지도 미국무성의 분석자료는 '국가사회주의'라고 평가할 정도로 급진적

⑤ 조선신문기자회의 임시정부 정체에 대한 서울시내 가두 여론조사 결과(47년 7월 3일 실시, 2495명을 10곳의 가두에서 5가지 설문조사 김천영 『연표 한국현대사 721쪽』)

1> 6월 23일 반탁테러 사건은?

① 독립의 길이다(26%) ② 아니다 (71%) ③ 기권(3%)

2> 미소공위와의 협의에서 제외할 정당.사회단체는?

① 있다 (71%): 한민당(1272) 한독당(922) 독촉국민회(309) 남로당(174) 민전(9) 대한노총(91)

전평(14) 건청(19) 광청(30), 기타 ② 없다(14%) ③ 기권(13%)

3> 국호는?

① 대한민국(24%) ② 조선인민공화국(70%) ③ 기타(1%) ④ 기권(4%)

4> 정권형태?

① 종래제도(14%) ② 인민위원회(71%) ③ 기타(10%) ④ 기권(5%)

5> 토지개혁방식?

① 유상몰수유상분배(17%) ② 무상몰수무상분배(68%) ③ 유상몰수 무상분배(10%) ④ 기권(5%)

3) 사회적 분단(46년 11월 이후)

: 1946년 북한의 반제반봉건민주변혁을 계기로 남과 북은 서로 이질적인 사회경제제도, 곧 남한은 기존의 식민지반봉건사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로 사회주의가 지배적인 경제형태로 되어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됨

: 의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조선전체가 북한과 유사한 반제반봉건혁명으로 사회주의 이행은 거의 필연

1. 객관적 요인

1> 경제적 토대가 사회주의 이행에 아주 용이했다.

: 중요산업자본의 93% 이상, 농지의 약 18%가 일본소유. 그러므로 해방과 동시에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소작제 실제적 와해의 물질 기반이 되었다.

2> 토착자본가 미육성으로 일본인 자본가 귀환과 동시에 계급구조상의 불균형, 즉 '자본가 없는 노동자'의 구조가 나타났다.

3> 조선인 지주와 일부 자본가는 대부분 친일행위로 지배계급의 정통성 상실로 인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해계모니 획득에 실패

4> 조선인 지배계급은 경제적 지배계급이었으나 정치적 지배계급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해방공간에 기존 정치세력이 와해됨과 동시에 국가의 억압기구인 경찰과 군대의 통제력을 상실

2. 주체적 요인

1> 일제시대 농·노동운동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의 계급역량이 성숙했다.

2>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급진민족주의자와 노동자·농민간의 연대가 이뤄져 농민·노동자 계급이 급진화

3> 민족해방투쟁에서 급진민족주의자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일반 국민들에게서 정통성을 획득하여 쉽게 건준, 인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4) 정치적 분단(48년 8월 이후)

: 남한의 5·10단독선거로 극우분단친일친미세력 집권

: 이에 북한은 연관장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단독선거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분단저지를 위해 한국전쟁의 시발인 작은전쟁이 48년 2.7구국투쟁부터 전개

: 미군정하 5·10제헌의회 선거의 특징(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열음사, 1996)
1> 모든 좌익 및 중도정당과 극우진영인 한독당 등의 선거 참여거부에도 불구하고 선거 강행,
2> 남한의 425개 정당, 사회단체중 선거에 참여한 단체는 43개에 불과,
3> 이승만 계열, 친일파로 이뤄진 한민당, 미국과 극우진영의 사조직이었던 극우청년단 등에 국한,
4> 5.10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정권장악은 투표행위 이전에 이미 결정됨,
5>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에 의한 정권창출이 권력창출의 대표정당성(민주성)이 있는지 논란제기.

5) 고착적 분단(53년 7월 이후)--한국전쟁의 결과
: 위의 4단계 분단의 필연적 결과물로 한국전쟁이 발발

: 미국의 개입으로 통일은 무산되고 분단의 고착화로 접어 들

2. 한국전쟁 전개과정

1) 전쟁5단계설

1> 작은전쟁

: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확정되고 분단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전을 중심으로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공개적인 무력투쟁을 선포한 2·7구국투쟁부터 실질적인 전쟁 시작

: 50년 6월 25일까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됨--인민항쟁(제주4.3항쟁, 여수·순천군민항쟁 등), 유격전쟁(지리산, 오대산 등의 유격대와 초기의 무장대), 38선의 '국경'전투(하루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음)

: 여순항쟁(48.10.19)과 국가보안법 제정(48.12.1)

: 무려 1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냄

2> 제한·확대전쟁

: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확전을 벌임으로써 시작됨.

: 초기는 서울을 점령하여 이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정부로 나아가는 제한전쟁의 성격이었음.

: 이는 지리적,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분단을 해소하려는 성격으로서 통일전쟁, 사회주의혁명전쟁, 의세를 몰아내려는 민족해방전쟁임

: 미군이 철군한 상태이므로 내전의 성격이 짙음

3> 전면전쟁

: 내전발발 3일만에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개입, 7월1일 지상군을 부산에 상륙시켜 남의 내전에 개입

: 이에 서울에 머물던 인민군이 남쪽으로 진격함으로써 전면전화.

: 북한은 7월 1일 전시총동원령. 남한은 7월 15일 작전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전쟁주체는 북한과 미국

4> 진영전쟁

: 북한정권이 붕괴위기를 맞자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로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확대전과 진영전

5> 교착·제한전쟁

: 1951년 6월 양측은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정치협상을 통하여 정전을 꾀했으나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교착전

<표1> 한국전쟁 5단계설

단계	작은전쟁	제한확대전쟁	전면전쟁	진영전쟁	교착제한전쟁
시점	1948.2.7	1950.6·25	1950.7.1	1950.10 말	1951.6월
종점	1950.6·25	1950.7.1	1950.10.말	1951.6월	1953.7.27
전쟁주체	남한좌익과 북한정부 대 외세 및 남한정부	북한정부와 남한좌익 대 남한정부	북한정부와 남한좌익 대 미국과 남한정부	중국·북한정부·남한좌익 대 미국·남한정부	중국·북한정부·남한좌익 대 미국·남한정부
전쟁성격(목적)	민족해방 및 통일전쟁 대 분단고착화전쟁	민족해방 및 통일전쟁 대 분단고착화전쟁	민족해방 및 통일전쟁 대 분단고착화전쟁, 통일전쟁	민족해방 및 통일전쟁 대 분단고착화전쟁, 통일전쟁	민족해방 및 통일전쟁 대 분단고착화전쟁
전쟁형태(주도적)	국지전, 국제적 내전	제한전, 순수내전	전면전, 국제전	전면전, 동서진영전	전면전, 동서진영전
미국정책	전쟁의 한국화	순수내전이었기에 미국정책 미해당	전쟁의 미국화	전쟁의 미국화	전쟁의 미국화 및 한국화

※ 밑줄 친 부분은 주도적 주체

2) 한국전쟁과 민중시련

가. 인위적 이산가족의 양산

나. 학살만행: 17만2천의 북한민간인, 12만 여명의 남한민간인 학살--남북정부 공식통계

다. 폭격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킨 전쟁범죄행위

라. 세균전

마. 보도연맹, 거창사건 등으로 양민학살 약 1백만명

문제제기: 만약 제한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5-6백만명의 민족상잔이 있었을까?

3. 국보법 제정의 구조적 배경

1. 정통성 부재의 이승만정권의 해계모니지배의 근거 상실로 폭력일변도 통치가 유일한 대안

1) 이 정권의 정통성 평가

1> 권력뿌리 정당성 부재: 친일파를 기반한 정권, 분단지향적 정권, 친미사대주의 정권

2> 권력창출의 정당성: 5·10선거의 정당성 부재

: 미군정하 5·10제헌의회 선거의 특징(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열음사, 1996)

<1> 모든 좌익 및 중도정당과 극우진영인 한독당 등의 선거 참여거부에도 불구하고 선거 강행,

<2> 남한의 425개 정당, 사회단체중 선거에 참여한 단체는 43개에 불과,

<3> 이승만 계열, 친일파로 이뤄진 한민당, 미국과 극우진영의 사조직이었던 극우청년단 등에 국한,

<4> 5.10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정권장악은 투표행위 이전에 이미 결정됨,

<5>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에 의한 정권창출이 권력창출의 대표정당성(민주성)이 있는지 논란제기.

3> 권력행사정당성

: 반민특위 해체, 친일파일색, 분단지향, 폭압적 독재

2. 작은전쟁 상태로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에서의 무력충돌로 이미 작은전쟁 상황

3. 분단국복과 통일을 위한 투쟁 지속

1) 2.7구국투쟁

: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남한 좌익이 주도한 공개적 무력투쟁(4.3, 여순, 유격항쟁)

: 2·7구국투쟁의(김인걸 외, 1998: 97).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민에게 맡겨라.

2) 남북협상

: 김규식계의 중도파, 김구 중심의 우익진영. 북한이 결합하여 남측 41개 정당사회단체대표 396명, 북측의 15개 정당사회단체대표 300명 등 696명이 참가

: 공동성명--<외국군대 철수> <외국군 철수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 확인> <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남한 단선을 불인정과 이를 통해 수립되는 단정도 불인정>

: 의의

첫째, 의세에 의하여 강요되는 분단을 분쇄하고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통일투쟁이었고,

둘째, 내전을 방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평화 지향적이었다.

셋째, 전체 조선인을 대변하는 사회단체의 연석회의라는 면에서 인민전체의 대표성을 가졌고, 또 참석자의 대다수가 민족해방투쟁에 종사하여 역사정통성을 가졌다.

3) 작은전쟁의 지속

: 분단국복과 통일을 위한 2.7구국투쟁의 연장선

: 4.3항쟁 선언문

-- 4·3항쟁의 무장대가 첫 무력행동을 개시하면서 제주도민과 경찰관에게 보낸 2개의 '호소문'에서 명시한 항쟁의 목적(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92-93).

시민 동포들이여!.. 미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쫓겨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 국가보안법체제의 성립과 몰락 -

장 상 환(경상대 경제통상학부)

1. 머리말

1) 국가보안법 폐지논리의 진전을 위하여

올해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1년째이고 내년이면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은 서기 2000년으로 새로운 1천년을 맞이하는 획기적 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유산인 냉전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문제투성이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잔존물인 남북한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신부님들의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내지 핵심조항인 7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261개 단체 참여)와 국보법 제 7조 폐지를 겨냥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민회의에서도 1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북한을 겨냥하는 정부참칭 문구를 삭제하고 제7조(고무 찬양 등)도 대폭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거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표적 움직임을 보면 첫째, 상설적인 연대기구운동으로서 '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모임'(94년)이나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19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존속) 등이 있었으나 운동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활동도 초기에만 반짝했다가 지지부진했다. 둘째, 민가협은 목요집회를 300회가 넘도록 진행하였고, 매년 8월 명동성당에서 농성과 양심수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장기수, 양심수라는 운동 주체의 성격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셋째, 민변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은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사법기관의 보수성의 장벽에 막혔고, 유엔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소송으로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전국연합, 범민련 등의 주도로 90년 이후 매년 8월 통일운동 행사 개최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국회 개원을 즈음한 국가보안법 개폐 청원 및 국회 앞 시위 형태의 입법부 압력 투쟁, 문학·예술·영상물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에 맞선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 대책위' 형태의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활동, 책자 및 자료집 발간 등의 홍보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유엔 인권회의와 인권위원회 참가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에 대한 상황 전달 및 항의운동 조직 등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¹⁾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준비위원회'(범투본(준) 위원장 강희남)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을 분쇄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당면한 과제로 삼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며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통일에국운동을 억압하며 분단기득권과 분단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어 왔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범투본, 「기자회견문」, 1999. 9. 9). 자주와 통일의 종속적 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경총련은 1999년 10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면서 "반미반전반김을 주선으로 당면한 국보철폐투쟁을 결합시켜야 하기에 전략적 구호(반미자주화)와 전술적 구호(국가보안법철폐)를 잘 결합시켜 투쟁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김대중 정권 퇴진시키자!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전쟁책동·경제침탈 분쇄하고 조국통일 이룩하자!
민족을 적이라 우기는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조국통일 일구어 내자!
노동자, 농민, 학생 총단결로 반민중,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하자!
국가안보 운운하며 우리 국민 다 죽이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시키자!

이렇게 한총련 계통 학생들은 반미자주화를 전략적 과제로 하고 통일을 촉진하거나 김대중정권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중의 생활과 직접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논리는 빈약한 것이다.

이렇게 종전 국보법 철폐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나 자주운동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종속시키는 논리>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고립을 초래했다. 국보법 철폐투쟁이 국보법의 직접적 피해자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설수록 더욱 고립화되어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철저하게 <인권의 논리>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그러한 방향의 운동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문제에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²⁾ 이번에 서준식씨가 주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핵심인 7조만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광범한 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킨 것도 이러한 인권 논리에 입각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논리만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국보법 철폐투쟁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지배세력이 아닌 경우에도 인권을 담보받으면서도 생활만 향상시킬 수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유의 제약을 감수하겠다는 성장제일주의, 실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상당

1) 박래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998.
2) 서준식, "새로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향하여-기본구상"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토론회 발제문), 1996. 12.

수 국민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일보 조갑제기자는 박정희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는 TV토론 석상에서 박전대통령이 인권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신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통령이 자유권은 약간 억압했지만 그 당시 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었던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인권을 신장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는 청취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산 것으로 보였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박정희는 스탈린과 히틀러처럼 경제생활의 지속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최근의 IMF사태를 유발한 구조를 구축한 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와서는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 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리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체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인권+생활의 논리>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즉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소수 사회운동가, 양심수들의 인권억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일상행동을 지배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엄청남을 입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인권을 제약당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남북이 대치된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운운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라는 논리는 현재의 시대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를 대중적으로 확충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도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연성을 모든 국민의 희생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³⁾

2) 기존 연구의 검토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의 연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홍성유는 1953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시기를 「군비경제체제 확립과 전재복구기」로 파악했다. 휴전후 미국의 대한원조는 군비확충과 전재복구라는 긴급한 필요에 직면하여 당시 파탄상태에 있었던 한국제정을 지원해줌으로써 위의 두 요구를 충족시켜주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미국원조의 목적은 미국 자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유진영경제의 군사화였으며, 수원국의 군비증강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것이다. 전후 한국의 군비증강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한 군사비의 과대팽창이 재정투융자 사업비의 팽창과 더불어 이 시기 재정파탄, 악성 인플레이의 주요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자본축적의 경로를 도식화한다면 인플레이의 누진에 의한 강제저축과 기존 자본침식의 교차--> 강제로 형성된 자원의 왜곡된 분배 --> 일부 독점자본의 비대와 농촌 및 도시중소기업의 위축 --> 국민경제의 파행적 성장의 제과정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⁴⁾

3)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 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대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서준식,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11월 2일

4) 홍성유,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pp.75-81.

박현채교수는 한국전쟁을 한국사회 내부의 모순관계에 기초를 갖는 시민전쟁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보았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정부의 특혜와 미국의 원조에 의한 전근대적인 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 종속적인 경제구조의 심화, 긍정적인 면에서는 시민전쟁적 성격에 의한 반봉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한국전쟁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어지는 한국경제의 구조 및 상황에의 파급은 큰 것이었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귀결한 것은 매판적이고 전근대적인 관료독점자본의 급격한 형성과 종속적인 경제구조의 심화를 계기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존립기반 잠식과 몰락, 농촌경제의 파탄, 3차산업의 비대화 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파급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긍정성을 갖는다. --- 한국전쟁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것이 시민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역사에서 낡은 것의 청산을 위한 시도로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갖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성격의 변혁 및 시행의 대행자로서의 성격이다. 당시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에 따른 민족적 과제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과 반식민지자본주의와 반봉건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지향은 단절과 분화가 있었고, 이것은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분단에 의한 적대적 대립으로 된다. 그리고 이것은 6.25전쟁으로 된 것이다. --- 전쟁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전투행위의 소산으로서의 전쟁피해가 아니라 계급투쟁 결과로서의 피해의 반영이다. --- 남한의 경우 전쟁 피해 가운데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는 지난날 지배기구의 중추를 장악했던 구지주계급이나 자본가계급에게 집중되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철저화를 의도하는 이와 같은 인적 청산은 민주개혁을 내세운 물적 수탈과 함께 종래의 지배기구 그 가운데서도 신분적 제약과 지주소작관계 위에 선 반봉건적 지배기구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이었다. 비록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정은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지난날의 불평등한 사고방식을 근본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으며, 저항을 느끼면서도 이것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켜갔다. 따라서 6.25전쟁은 종래의 사회의식에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변혁에 버금가는 사회적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전쟁후의 남한의 경제 사회 및 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역사의 진보의 쪽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북한이 남한에서 행한 개척과 더불어 남한에서의 개혁을 촉진하거나 그 내용을 보다 급진적인 것으로 하게 함으로써 생산력에 덮어씌워진 질곡을 제거하는 것으로 된다.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개혁으로서의 토지개혁은 전쟁이 갖는 의미를 보다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크게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남한의 경제사회 및 경제구조에 미친 영향은 모순적이다. 그것은 한쪽으로 한국경제의 종속적 구조를 계기지으면서 보다 더한 자본주의발전,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결과했다."⁵⁾ 이러한 박현채교수의 견해는 독특하다. 특히 한국전쟁이 물적 파괴를 초래하고, 남북분단을 영구히 하는 부정적인 역할만을 했다는 상식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의 계급투쟁으로서 한국전쟁을 위치시키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일소되었다는 평가는 탁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박현채교수의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이대근교수는 한국전쟁이 한국 내부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미친 영향으로 반봉건적 농업경제의 해체와 농업의 피폐; 남북분단의 물질적 토대 구축; 재정금융구조의 대외 의존, 외환

5) 박현채, "한국전쟁과 한국경제의 전개", 『현대사회』 제36호 (1990).

국제수지의 대외의존; 원조의존적인 공업화 진행으로 농업중심사회로부터 산업사회적 성격으로의 전환 촉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원조는 한국에서 고용감소와 제3차산업의 비대화만 초래했고, 또 외국인 시설 및 원자재의 도입에서도 미국원조보다는 오히려 비원조재원의 양적비중이 더 컸으며, 이 시기 공업화에서 미국원조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자율적인 발전잠재력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조의존축적론”을 기각한다. 대신 공업화의 계기는 농업부문의 희생과 정체라고 보는, ‘농업희생축적론’을 제기한다. 즉 정부는 환율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해 곡가를 낮게 통제했으며,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농업부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를 고율의 현물납으로 징수했고, 농공산품간에 협상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임했기 때문에 농업부문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잉여가 공업부문으로 이전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부 공업부문에서 대자본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⁶⁾ 이에 대해서는 원조의존축적론으로도 이 시기 농업의 희생과 정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희생축적론이라는 가설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⁷⁾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환교수는 한국전쟁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에 끼친 영향을 전후 복구과정으로서의 1950년대 사회경제적 위상을 통해 분석한다. 1950년대의 전후 복구과정을 원조경제, 국가 비중의 확대, 재벌형성 등을 밀접히 연관시켜 <원조-국가-재벌>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역사구조적 차원에서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형성해나간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⁸⁾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국가개입의 성격이 불황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본격화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를 곧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커밍스(1997)는 한국전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전쟁을 겪으면서 과도적인 지배세력, 특히 지주계급의 정치적 힘이 제거되고 민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민중들의 자유로운 운신이 가능해졌고, 이들 대신 전쟁중 군납 등을 통하여 재벌들이 형성되어 공업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의한 파괴는 공장 과 산업시설을 혁신하도록 했으며, 전쟁을 계기로 60만대군으로 성장한 군부는 가장 잘 조직된 기관으로서 곧 정치적 힘을 행사하였고, 30여년간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훈련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⁹⁾

와다나베(1983)도 한국전쟁후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화를 유지해온 지도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확실하다. 독립후에 이 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항상 긴장에 쌓여있었다.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립은 정부를 비롯한 국민에게 강대국이되어야 한다는 지향성과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결의를 공고히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속하는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의 약화, 주한 미군의단계적 축소화는 한국 군 민 사이에서 경제군사면에 있어서의 자립화의 긴급성을 인식시켰으며, 이것을 지지하는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배양하였다. 과대한 군사비 부담은 확실히 한 면에서 본다면 이 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긴 했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화학공업화

6)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까치, 1987).

7) 김양화,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서평-”, 『경제사학』 제11호, 1987.

8) 김대환,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1991).

9)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Norton, 1997, pp. 301-304.

의 배후에 있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과중한 부담을 유지한다는 국민적 정열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부국강병이 명치시기 일본의 공업화 이데올로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멸공통일은 현대 한국공업화의 중요한 이념으로 기능하였다.”¹⁰⁾

국가보안법체제가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 연구는 별로 없다. 김영규(1997)는 현재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다원적 정치과정,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앞세우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육성할 수 없도록 했고, 경제적으로는 전투적 노동운동 차단, 재벌해체 주장세력의 국보법에 의한 탄압으로 재벌을 옹호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구축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문화적으로는 학문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까지 억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것과 상당한 관련을 갖는 연구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서 손호철(1993)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한국전쟁에 의하여 과잉결정된 탈계급적 정치지형위에서 4.19혁명후, 70년대, 80년 전후 등의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속적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해 요구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6공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한적 민주화의 장래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개량적 물질 토대 확보문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탈종속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고 유보적 내지 비판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

3) 구조적 역사적 시각

이 글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의 이론적 진전과 실증적 심화를 위해 한국전쟁을 계기로 성립하여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 및 위기의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체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촉진한 요인이었음과 동시에 갖가지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오늘날 한국경제가 IMF사태를 맞이하도록 한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체제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경제적 토대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영향을 주목하고자 한다. 상부구조의 특성은 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법칙이다. 예컨대 시민혁명은 산업부르주아계급의 형성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부구조 또한 경제적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 상부구조는 법률, 제도, 계급적 역학관계 등이다. 특히 후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경제적 토대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시민 내지 자본가계급의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국주의의 영향하에서 국가주도로 위로부터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상부구조의 특성이 경제적 토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이 높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사회 상부구조의 특성으로서 국가보안법체제를 중시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체제’의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분단체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백낙청교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백낙청교수는 통일운동의 일상화를 위해 분단체제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한다. 민족해방을 최우선목표로 삼는 통일운동이건 남한의 민중혁명을 먼저 이룩함으로써 통일의 길도 열 수 있다는 남한 자체의 체제변혁운동이건 간에 대중의 생활현실, 생활감정과 동떨어진 운동을 낳았고, 일상성을 완전히 등진 운동이 그럴 수 밖에 없듯이 대중

10) 渡邊利夫(김장남 역), 『현대한국경제분석』, 유풍출판사, 1983, pp. 43-44.

의 호응을 거의 못 얻거나 일시적으로만 얻는 운동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단순히 분단상황이라는 개념에 비해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사회제도)를 가졌으면서도 양자가 교묘하게 얽혀 분단현실을 재생산해가기도 하는 구조적 현실을 좀더 확연히 인식하기 위하여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체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사회현실로서 상당수준의 자기재생산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다만 남한이나 북한의 체제를 말할 때 자본주의세계체제라고 할 때와 체제의 의미가 다르듯이 분단체제라고 할 때의 체제는 또 조금 다른 내포를 갖는 개념이라고 한다. 세계체제 -> 분단체제 -> 남북한 각각의 체제의 위계질서로서 분단체제라는 중간항을 생략하고서는 남북 어느 한 쪽 체제의 작동방식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¹⁾

우리 사회에서는 70년대에 대하여 '유신체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이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다. 이 때의 체제란 특정개인의 퍼스널리티나 정치세력의 집권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화된 질서로서 재생산되고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변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온 것이다. 또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벌체제'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유사한 맥락에서의 용어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IMF체제라는 말은 의외의 충격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인해 사용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뒷받침을 받은 국가보안법체제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확립된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권을 억압하는 체제인데도 지금껏 다수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왜 최근에 와

11)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1999.

다만 백낙청교수의 분단체제론은 '선통일, 후민주화'의 논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백교수는 분단체제론이 남한 민중은 남한 자체의 개혁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고 북한 민중은 그들대로 북한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양쪽의 운동이 한반도 민중의 생활주도력을 극대화하는 통일이라는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연대한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분단체제의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실제로 백교수는 "남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으로서 세계혁명에 불을 당긴다는 식의 허황한 꿈에 빠지기 쉽다"고 일축하고 있다.

필자는 통일에도 독점재벌이 주도하는 통일과 민중적인 통일이 있을 수 있고, 민중적인 통일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위에서,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가운데 달성되는 통일이 아니면 민중적 통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이 주도하는 통일도 분단체제를 극복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일체의 주장과 실천을 겨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 국제사회주의 그룹은 북한에 대하여 국가자본주의체제로 맹백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리적 행동 등의 실천을 하지 않는데도 혁명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하고 있다.

서는 신부님들까지도 삭발, 단식 등의 적극적 행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가설적으로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960, 70년대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과 자유의 제약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동권의 억압을 수용하였고, 또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로 생활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최근 박정희 전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 특히 60, 70년대에 사회생활을 한 노령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에는 이러한 근거가 있다. 국가보안법체제가 고도성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국가보안법체제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0, 9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경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배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벌체제, 사유재산절대주의 등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 1997년말의 IMF 사태와 같은 파국적 경제공황의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전기, 가스, 통신망, 금융거래망 등 고도로 복잡한 기술시스템의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고 우리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는다. 이제는 자유와 인권의 보장없이는 경제적 생존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오면 국가보안법체제는 자본주의체제 모순 완화와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에 역기능적 역할로 전환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와 경제불안정 및 재생산위기 사태가 국가보안법체제의 전환과 종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2. 국가보안법 체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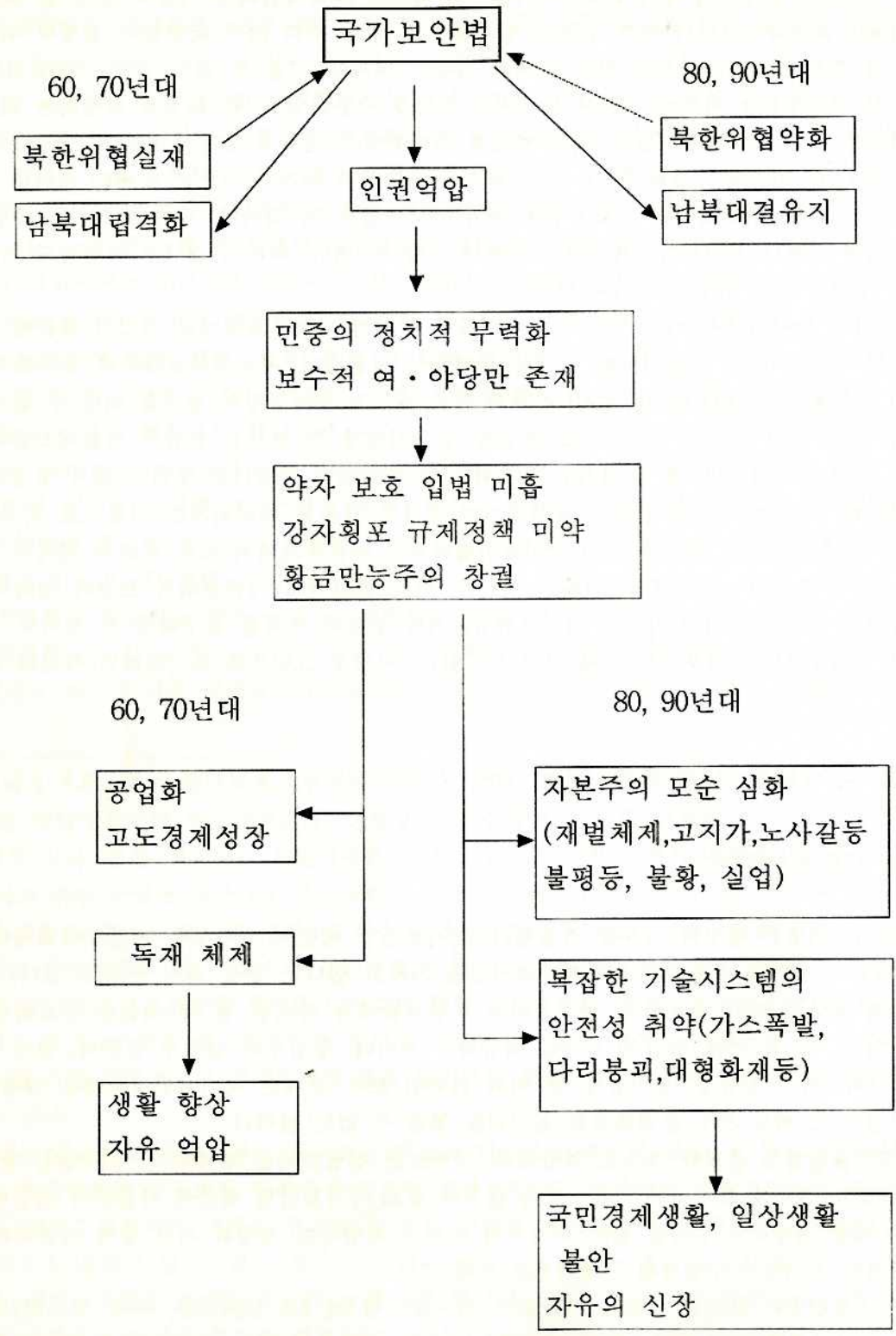
1. 기본적 인권 억압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주장하거나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녀사냥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 사면을 할 때 제출을 강요하는 준법서약서 제도는 바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양심수와 양심수 군문제, 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통신검열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국가보안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종교의 자유도 억압했다. 자유로운 신앙고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종교도 심하게 왜곡되어 기복신앙이 판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정성과 기도 등에 의존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정신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고무, 찬양, 동조죄)과 제 5항(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탐독죄)이 바로 해당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언론인 출판인들이 형벌을 당하였는가.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비판적인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과 국민생활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했다. 학문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데 학문적 연구결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경우 사회과학분야에서 진리 추구라는 학문의 존립근거는 없어지고 학문에게는 체제정당화 기능만이 남게 된다. 검찰이 1988년 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움의 서관모교수 발제문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한 것이나 1994년에 경상대학교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성있는 것으로 재단해 사법처리한 사건은 학문의 자유 침해의 전형적 사례이다. 조선일보가 김대중정권에 자문역할을 한 최장집 교수에까지 '마녀사냥'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를 잠재울 수 없고 제2, 제3의 최장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국민들은 주민등록제와 불심검문을 강요당하였고, 충성서약으로서 국민교육헌장 암송,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당하였다. 한국사회가 사실상의 전시체제와 총력 국가안보체제하에 놓여 있다는 상황논리로 이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력서난의 사회단체, 정당 가입난을 보면 주눅부터 든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 입장을 폄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저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근로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여정당을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해방후 일본의 지배 와해와 미군의 진주지연과 지방행정 장악 지체라는 지배체제의 공백을 배경으로 진보적, 혁명적 정당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미군정 및 우익정치세력들과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였다. 근로인민당, 신민당, 조선공산당, 남로당등에 수십만의 민중들이 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미군정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약화되었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궤멸했다. 1946년 5월의 조선정판사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한 1946년 9월 이후에도 미군정의 확고한 지배가 관철되지 못했다. 미군정과 지배가 확고히 관철된 것은 형식상으로는 1948년 8.15 단정수립으로,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1953년 7.27 휴전으로 가능하였다. 한국전쟁은 역동적 균형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익 분단지향세력의 일방적 우위를 결정지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모든 진보적 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정치과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정치공간의 축소와 사실상 부재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제반원칙마저 권력집단의 독단에 의해 부정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복진 무력통일에 반대하여 평화통일을 주창한 진보당은 한국전쟁후 1950년대에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희생물이었다.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총투표수 906만표 가운데 256만표로 30%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하였다.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창당대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 김달호, 그리고 간사장에 윤길중을 선출하였다. 진보당은 근로대중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민주적 혁신정당임을 밝히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1958년 5월의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당인 자유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진보당의 당세 확장을 두려워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월 11일 조봉암위원장을 비롯한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주요간부 10여명을

평화통일론이 북의 주장과 같으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진보당간부들을 구속한 후 1958년 2월 25일 공보실은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조봉암은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채심 청구가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959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1955년 12월 22일 발표된 진보당 발기취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파괴의 음모'를 발견할 수 없다. 진보당사건은, 정당성 없는 부패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음모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쇠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4.19혁명후의 열린 정치적 공간속에서 1960년 5월부터 진보당 계열의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근로인민당의 장건상, 김성숙, 최근우, 그리고 민주혁신당의 서상일, 이동화 등은 새로운 혁신정당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1960년 5월 17일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표에 서상일을 추대했고, 총무위원에는 서상일, 박기출, 최근우, 정화암, 이훈구, 김성숙, 김달호, 조현식, 윤길중, 송남현, 유병목 등이 선출되었다.¹²⁾

사회대중당 창당과정에서 이탈한 전진한 김성숙은 한국사회당을, 장건상과 유림등은 혁신동지총연맹을, 그리고 고정훈 등은 사회혁신당을 1960년 5월 발기했다. 6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민의원 선거와 초대참의원 선거결과 혁신세력은 민의원에 5명(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 참의원에 2명(사회대중당 1명, 한국사회당 1명)만 당선되었다. 민,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한 혁신세력은 원내외에서 다시 통합을 모색한 결과 서상일, 박기출, 조현식, 이훈구, 윤길중, 구익균, 김성숙, 장화암 송남현, 고정훈, 이동화 등에 의해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이 발족되었다. 통일사회당은 정치노선은 민주사회주의를, 통일방안으로는 영세중립을 주장하였다. 통일사회당에 참여하지 않은 김달호 계열은 1960년 11월 24일 사회대중당을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또 통일사회당에도 사회대중당에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우, 유병목 등은 자주적 평화통일 등의 구호를 들고 1960년 11월 27일 사회당을 조직했으며, 장건상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은 1961년 1월 8일 혁신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혁신세력들은 그들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민족일보 뿐만 아니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통일촉진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 행동단체를 통해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공공연히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고 국가보안법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군사정권은 혁신정당과 통일운동단체의주요인물들

12) 사회대중당은 정강정책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지도간부들이 주장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4월학생의거를 민주혁명으로 발전시킨다.

이승만정권의 실정은 자유, 민주 양 보수정당의 공동책임이다.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남북의 군대를 축소한다.

제네바회의 결정에 따라 중립국 감시아래 평화통일을 촉진한다.

중공의 유엔가입을 지지한다.

민주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한다.

을 체포 구속하였고, 4.19혁명 기간에 발간되어 민중들의 성원을 받았던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씨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처형되었다. 김종필이 주축이 되어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져 국가보안법체제 수호기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잔인한 고문으로 부풀리거나 조작해 내었다. 인혁당사건(1964)은 한일회담 반대투쟁과 6.3사태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인혁당 재건위사건(1974) 역시 민청학련운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공세력의 책동으로 몰아 억압하려고 조작한 것이다. 남민전사건(1979)도 유신말기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었다.

1980년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짓밟고 권좌에 앉은 전두환 정권 역시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의 중요수단으로 악용했다. 5공 시절에 전민학련 사건, 아담회 사건, 한울회 사건, 반제동맹 사건, 민청련 사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등 공안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더구나 1986년 10월 17일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유성환씨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중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7년의 5공화국 시기에 1천5백명, 6공화국시기 5년간에 2천명에 이르고 김영삼정권 처음 4년간에도 1천명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던 민중당에 대해서도 중부노동당(이선실간첩)사건으로 탄압하였다. 최근에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여 발기인대회까지 가진 민주노동당도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불가피하게 굴절된 주장을 하거나 탄압받아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용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데 악용되었다. 국보법 위반자의 90% 이상이 7조위반,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혐의였고, 이것은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한 것이다.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야당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 선거때만 되면 간첩사건이 터졌다. 총풍사건은 북한정권조차 남한 우익정권과 거래해왔음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남북대결의식, 전쟁위기의식 조장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표출을 억압하여 우익 집권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국가보안법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심화시켰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주눅들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했다. 부패극복에는 내부고발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자 보호가 불가능했다. 부정부패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은 남한체제를 비방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조차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정치인, 재벌 등 우리 사회 지배세력들의 권력남용, 부정부패는 비판받고 견제받지 못한채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지역주의적 정치의 원인이다. 한국정치가 아직도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보수기득권층에 대항하는 대안적 정치세력, 즉 노동자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권정치의 원인이다. 보수 여야정당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었고 이 정치자금을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가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옹호활동 제약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할 말을 하지 못했다.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아닌가.

좌익은 씨를 말려야 할 대상이 되었다. 전쟁 전후 월북한 사람의 가족은 물론이고 전시에 거창, 산청, 함평 등지에서 벌어진 군경의 양민학살 충북 영동군 노근리를 비롯하여 낙동강 주변에서의 미국에 의한 양민살해사건 등 무고하게 학살당한 주민의 가족들도 국민으로서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연좌제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가운데 7조(찬양, 고무, 동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93%에 달한다. 우리 사회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거나 정면으로 비판하면, 예컨대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라고 말하거나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하거나 화집에 '세상 확 뒤집혀버려야 해', '미국놈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술한잔 걸친 김에 박정희를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면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잡혀들어갔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권이 부정되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모나면 정맞는다', '말 많으면 빨갱이' 라는 살벌하고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의식화되지 못한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노동문제와 농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지만 노동자, 농민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 농민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도시산업선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등 종교적 형식의 조직을 통해 활동하였는데 이것은 주체적 역량이 취약했던 것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주적 민중운동이 빨갱이운동으로 탄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까지 자본측의 노동지배 논리로 빨갱이담론이 구사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995년 5월 19일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국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발언, 노동쟁의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비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했다. 김대중씨까지도 5월 29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노동쟁의로 혼란할 경우 국민들이 보수화돼 여당에게 표를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노동자투쟁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4. 출세주의 만연

국가보안법은 우파적인 사고방식인 이기주의,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만연시켰다. 우파들은 불평등은 선천적인 것이며, 따라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파들은 평등주의자들을 이론상으로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저히 실천불가능한 원리를 맹신하는 미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불평등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파들은 대답은 "억울하면 출세하라"이다. 우파 정치세력은 현재의 불평등구조를 존속시키거나 확산시키려 한다. 우파는 사람사이의 관계를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로 본다. 위사람과 아래사람으로 구분하고 위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우르러보고 부러워한다. 우파는 지위와 재산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중시하고 지위와 재산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 우파 아내와 함께 살면 남편들이 괴롭다. 많은 남편들은 남들에 비해 수입이 적고 직장도 불안정한데 우파 아내들은 이들 남편을 출세하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구박한다. 또 우파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자녀들이 괴롭다. 우파

어머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마구 구박한다. 심지어는 죽어버리라는 극언도 마다하지 않아 자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도록까지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파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평등주의를 본질로 하는 좌파적 사고방식과 실천이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5. 창조적인 문화활동 억압

국가보안법은 문학과 예술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압했다. 해방이후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국보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화가 신학철 그림의 초가집이 김일성의 생각과 닮았다는 이유로 신화백이 구속되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레드헌트』라는 영화는 최근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영화상영을 주도했던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는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작품,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심리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을 침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왔다. 많은 사회인사, 진보세력은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까 표현을 조심하고 심지어는 자기검열에 전전긍긍하였다.

6.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맞아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정하는 등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하는데도 통일의 한쪽편을 반국가단체, 즉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

북한의 체제적 위협이란 허구이다. 식량난과 아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현재 남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상실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는 국가보안법의 존재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북한형법이나 노동당규약이 남한을 혁명으로 전복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적 국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먼저 변하고 나서 북한더러 변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진통일을 외쳐 대던 냉전시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1991년 9월 17일에 실현된 남북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1991년 12월 13일 남북 총리사이에 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간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에도 정면으로 저촉되는 법률이어서 진작에 폐기 처분되었어야 할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민간측의 남북간 교류를 억압함으로써 현대 등 재벌이 남북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과 소떼 1,000마리는 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들이지 않는 것인가? 북한과의 대화·협상·교류·우호 그리고 마땅히 자유로워야 할 민간부문의 평화적 통일운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창구단일과 논리만을 내세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통일을 어

럽게 한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체제가 민주적이고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북한주민들은 남한체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다.

7. 미국의 영향력 강화

1949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한국의 군사와 경제는 미국에 의해 사실상 지탱되어왔다. 한국전쟁의 발발후 연합국과 미국은 자유진영으로 불리웠고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관계로 되었다. 물론 미국이 지배적 지위를 장악했다.

50년대의 대규모 원조 역시 한국전쟁의 부산물이다.

미국의 주둔 역시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이를 원천으로 미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에 깊이 간섭해왔다.

3. 국가보안법 체제와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

1. 고도성장 요인으로서 국가보안법 체제

여러 논자들은 한국의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요인을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 외자도입, 수출공업화정책에서 찾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후진국들은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부 주도로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공업화정책을 추구했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유사한 공업화정책을 추구했는데도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국가가 대만과 한국 정도에 그친 것은 이들 국가에 공업화를 개시할 당시 급속한 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체제적 조건으로서 60, 70년대 당시의 대외적 조건이 후진국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수행에 특별히 유리했다.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고도성장과 무역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다각주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세계경제질서가 형성되고 가트체제가 선후진국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허용하였고, 전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 하에서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부 후진국의 중심부로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 게 일반특혜관세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개도국(한국)은 외자도입과 수출시장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포착할 수 있었던 나라는 소수에 그쳤다. 단순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생산능력을 갖춘 개도국은 많지 않았고, 이들 나라중 적기에 정책을 전환한 나라는 적었기 때문이다.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만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후진국 전부의 상향이동은 불가능했고, 개별국가의 상향이동만 가능했던 것이다(이제민, 1995).

둘째, 국내적으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몰락과 자본가계급의 육성 촉진, 다수 농민의 자작농화, 귀속재산 불하에 의한 재벌의 형성 촉진, 그리고 한국전쟁에 따른 노동자 농민의 권리억압과 희생이 초과착취적 축적에 의한 고도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과 자본가계급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조건을

제공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토지를 상실하고 지가증권을 받았는데 상인들과 자본가계급은 이 지가증권을 사들여 귀속재산을 불하받는 등 자본을 본원적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개혁후 자본가계급으로 전신하는데 실패하였지만 그들이 소유하던 자산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그 뒤의 자본주의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¹³⁾ 또 농지개혁을 통하여 지주계급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공업화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더이상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됨으로써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종속적인 고도성장의 원동력을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들 노동력은 대부분 농가의 자녀들이었다.¹⁴⁾ 1960년에 1인당 GNP가 90달러인 국가에서 5-14세 아동의 국민학교 취학률은 22%였으나 한국은 59%로 2배 이상 높았다. 1960-65년의 15-19세 중등학교 취학률은 약 27%로 1인당 GNP가 380달러인 국가의 평균취학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도 1인당 GNP가 한국보다 3-4배 높은 나라들과 대등한 수준이었다(서찬수, 1989). 이렇게 1960년대 이전에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10-15년이 경과된 60년대말과 70년대에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민에 대한 저곡가를 통한 수탈, 조세수탈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탈로 거둬들인 재원을 재벌들에게 특혜로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해방후 한국에서 동맹세력으로서 자본가계급을 육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여 미군정과 이승만정부는 귀속재산을 헐값으로 불하하였다. 귀속재산 불하의 의의는 일제하 상인자본가세력을 매관료독점적 산업자본가계급으로 변신시킨 데 있었다. 현재의 50대 재벌 가운데 13개 재벌이 귀속재산 획득을 통하여 재벌이 되었다. 이 재벌들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공업화의 주역으로서 역할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특혜 불하는 귀속재산 국유화를 통한 국가자본주의방식의 길을 막았고, 기업가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이윤 획득보다는 관료적 특혜를 얻는데 급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를 기생적 부패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계급역학관계를 결정적으로 조성했다. 전쟁과 농지개혁을 계기로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일소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력이 창출되었고(정진상, 1994),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 사회운동 역량이 꺾임됨으로써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내전과 분단에 의한 저항세력의 약화는 외국자본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다.

요컨대 한국이 대만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선두에 서게 된 공통적 요인은 모든 후진국이 처한 국제경제적 여건을 일단 제쳐둔다면 내부의 구조적 변혁에 있다. 지주제를 철폐하여 기생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키고 귀속재산불하로 자본가계급을 조기에 창출했으며, 여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노자간의 계급적 역학관계가 자본가계급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 조성한 조건이었

13) 지주계급은 농업투자를 앓더라도 매년 소작료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기생적이다. 반면 자본가계급은 직접생산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기는 하지만 기술혁신을 태만히 하면 경쟁과정에서 몰락해버리므로 끊임없는 재투자를 해야 하고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이다.

14) 50-60년대에 흔히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농민의 수탈에 의한 대학의 비대한 성장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농가에는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위에서 성립된 한국공입화모델을 후진국 공업화의 전형적 모델로서 모든 시대에 타당한 것으로 특권화할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1) 국가주도

60-70년대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의 본질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억압에 의한 저임금 저농산물가격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외종속과 국가주도의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 자본의 원축기 및 산업혁명기에는 국가적 폭력에 의한 자본의 형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후진국은 선진국의 해계모니 하에서 공업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특징에 더해져 국가의 경제개입이 훨씬 심화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중심이나, 국가주도나 의 논란은 초점을 잘못 맞춘 논쟁이다. 이 모델에서 국가의 활동은 고도로 발달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나, 반(反)시장적인 것은 아니었고, 시장형성적(market fostering)인 것이었다. 시장의 발달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과 자본축적 촉진기능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자본축적을 촉진했고, 시장을 형성해간 것이다.

후진국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경제통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계획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균형을 파괴하고 기존경제구조를 질적으로 변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제구조의 질적, 구조적 변혁은 기존 사회질서와 가치기준의 변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의 전제가 되는 거액의 자본동원 또한 취약한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 없으며,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공업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 등과 같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부문은 자본소요액, 자본회임기간, 이윤율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범위는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후진국에서는 계획목표의 달성수단이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자본동원 및 투자 등 직접적 수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박정희정권의 경제운영방식은 거시적 경제운영 뿐만 아니라 미시적 산업구조 개편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박정희정권당시 경제수석비서관 오원철은 이것을 '경제건설의 공학적 접근법'(Engineering Approach to Economic Construction), '국가적 계획경제 체제' 또는 '한국경제 주식회사체제'로 불렀다. 공학적 접근방식에서는 시장기구, 개방경제에서의 효율성, 즉 경제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개방경제의 조건에서 수출축진을 최우선시했다. 목표(생산, 수출 경제성장률 상승 등)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며, 시기별 육성계획을 세우며, 외국의 경험과 지식이 도입하여 더욱 세부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주체로 하여 경제계획의 실천을 강행토록 한다는 것이다(오원철 1995-97).

일련의 5개년 경제계획 하에서 정부는 기초적인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민간경제에 대하여도 각종의 통제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인허가, 자금배분, 공산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수입규제 등 경제통제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모순의 출현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국가가 민간부문, 즉 사적 자본의 취약한 능력이라는 조건 위에서 급속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동원했던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전시체제하에서와 유사한 경제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주도가 가능했던 것은 5.16후은행의 국유화로 국가가 자금배분을 통제할 수 있어서 자본가계급에 대해 구조적 자율성을 가진 반면 국가보안법체제로 인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억압당해 국가활동을 제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요소투입 증대에 의한 성장

고도성장을 지탱한 원천은 크루그만(1994)이나 영(Young, 1995)이 지적했듯이 생산성의 향상 보다는 주로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의 양적 확대에 있었다. 투자율은 극히 높아져서 2차계획기에 이미 26.3%에 달했고, 4차계획 이후에는 30%를 넘어섰다. 이를 뒷받침한 저축을 보면 가계저축률은 4차계획기에 겨우 10%를 넘었고, 1981-84년에도 8% 정도였다. 이에 비해 기업저축률은 71-84년까지 계속 10%를 유지했다. 저축과 투자의 겹은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으로 보전하였다. 해외저축은 1차계획기에는 투자의 절반이상, 2차계획기에는 40% 정도를 충당했는데 3차계획 이후에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1> 투자율 및 저축률 추이(%)

		1차계획 (1962-66)	2차계획 (1967-71)	3차계획 (1972-76)	4차계획 (1977-81)	5차계획 (1982-86)	6차계획 (1987-91)
평균투 자율	계획	22.6	19.1	24.9	26.2	31.6	31.3
	실적	15.6	26.3	27.1	31.8	30.3	38.6
평균저 축율	국내저축률	6.9	14.8	20.8	23.4	27.7	35.0
	해외저축률	8.7	10.5	6.7	8.2	2.7	3.3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주요경제지표』, 각년도호.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약 132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되었고,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인 1966-85년간에는 매년 50-60만명이 유출되었다. 이러한 유출인구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요원천이 된 것이다. 유출인구는 연령으로는 사례연구들에 의하면 5-34세의 인구가 60-80%를 차지하고, 특히 단신유출은 15-24세가 60-70%를 상회한다. 그 결과 군지역에 사는 농촌인구 비율은 1960년 72%에서 85년에는 34.6%로 급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도 1963년에 농림어업 63%, 제조업 7.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8.3%에서 1985년에는 농림어업 24.9%, 제조업 2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0.6%로 농업중심에서 2,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표 2>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천명,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총인구	24,989	29,193	31,466	34,707	37,436	41,056
농촌인구(郡지역)	17,992	19,372	18,512	17,910	16,002	14,205
농촌인구비율	72.0	66.4	51.6	51.6	42.7	34.6

	1960-66	1966-70	1970-75	1975-80	1980-85
총유출인구	1,640	2,376	2,509	3,316	3,344
연평균유출인구	273	594	502	663	668
연평균유출인구비율	1.5	3.1	2.7	3.7	4.2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년도호 및 기타자료.

단위투입당 산출로 정의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가는 별로 높지 않았다. 1963-90년에 TFP는 총생산증가율의 약 1/4에 해당하는 평균 2.4% 상승하였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듯이 60년대보다도 70, 80년대에 갈수록 생산성향상에 의한 성장기여도는 낮아졌다.

<표 3> GDP 성장의 원천

	1963-73	1973-79	1979-1990	1963-90
성장률(연평균)	9.00	9.26	8.21	8.74
<성장기여도>				
요소투입	5.64	7.01	6.66	6.36
기업노동투입	3.18	3.49	2.66	3.04
고용자수	2.28	2.13	1.64	1.99
근로시간	0.50	0.52	-0.07	0.27
연령 및 성별구성	-0.06	0.30	0.14	0.10
교육	0.47	0.55	0.94	0.68
비주거용 자본투입	1.19	1.79	2.66	1.92
주거용 자본투입	1.24	1.67	1.26	1.35
요소투입당 생산	3.37	2.25	1.55	2.38
자원배분 개선	1.23	1.76	0.96	1.24
농업부문	1.17	1.55	0.84	1.12
비농업 자영업	0.06	0.21	0.12	0.12
규모의 경제	0.26	0.34	0.21	0.26
지식 진보와 기타	1.64	-0.02	0.50	0.80

자료 :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4.

이러한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방식은 노동력 공급이 풍부하고 자본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느 부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시점까지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의 부문간 수익성 차이가 중요시되는 80년대에 와서는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자 도입과 수출지향 공업화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수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자본을 도입하였다. 1960년대에는 투자재원 조달의 40% 이상을 외채에 의존하였고,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도입된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의 합은 24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차관도입이 가장 많았던 1971년에는 차관액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의 35.8%, GNP의 7.8%에 달하였다. GNP 대비 외채비율은 1965년 7%에서 67년 14%, 71년에는 30%로 높아졌다. 1972-79년에는 125억5천만달러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기간중 차관도입액은 GNP의 5%를 상회했다.

<표 4> 외채와 투자 1959-83(단위 : 백만달러)

기 간	공공차관	상업차관	외국인직접투자	총 계
1959-61	4.4			4.4
1962-66	115.6	175.6	16.7	307.9
1967-71	810.8	1,354.7	96.4	2,261.8
1972-76	2,388.9	3,043.9	556.0	5,988.8
1977-79	2,529.5	4,793.7	328.8	7,652.0
1980-83	6,246.5	4,434.1	404.1	11,084.7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주요지표』, 1983.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리의 수출금융 제공, 매달 수출진흥회의의 개최, 수출유공자 포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수출독려정책의 결과 수출액은 급증하여서 1966년 2억6천만달러에서 71년 11억3천만달러, 76년 78억2천만달러, 81년 206억7천만달러에 달하였다. 수출품 중 공산품의 비중도 1966년 62.4%에서 71년 86.0%, 81년 92%로 높아졌다. 수출촉진의 결과 수출입의존도는 62년 18.1%에서 70년 34.3%, 75년 59%, 80년 65.6%로 급상승했다. 1985년경까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경제의 재생산이 외국자본과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국내시장과는 연관이 약한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특히 1965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일본에 대한 기계류의 수입의존으로 일본에 만성적 무역적자를 지게 되었다.

<표 5> 수출입의존도 추이

	1962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수출의존도	2.2	6.8	11.1	24.3	28.9	33.2	25.8	25.0
수입의존도	15.9	19.1	23.3	34.8	36.8	34.2	27.7	25.0
수출입의존도	18.1	25.9	34.3	59.0	65.6	67.4	53.6	50.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한국의 국민소득』, 각년도판.

4) 재벌 육성

박정희정부는 기업가에게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조치를 강구했다. ①산업단지 제공 ②투자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자를 싸게 해주고 상환기간도 길게 해주었으며, ③관세 내국세에 대한 특혜도 실시했다. ④하나의 공업이 커져서 국제단위가 될 때까지 하나의 공장만 허가해주어 독점을 조장했고,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정책도 썼다. ⑤사

회간접자본도 공업육성 면에다 우선 순위를 두었고, ⑥기술자 특히 기능공도 정부시책으로 양성했다. ⑦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가와 근로자의 자부심을 심어주어 사기를 진작시켰다(오원철, 1995-97, 제 3권 12장).

박정권은 부실기업 긴급구제작업으로서 1972년에 「8.3조치」를 강행했는데 이를 통하여 사채동결(3,352억원), 특별자금 대출(2천억원), 산업합리화자금 대부(658억원), 금리인하, 환율안정, 물가동결 등으로 자본은 연간 1,028억원의 금리부담 경감의 특혜를 받았다. 그중에서 독점자본 분과에 혜택이 집중되었다. 8.3조치는 국가가 중간계층의 희생으로 산업독점자본의 위기를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6>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심화 추이(부가가치 기준) 1973-81

	전 체 GDP									제 조 업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73	1975	1978
5대	3.5	3.8	4.7	5.1	8.2	8.1				8.8	12.6	18.4
10대	5.1	5.6	7.1	7.2	10.6	10.9				13.9	18.9	23.4
20대	7.1	7.8	9.8	9.4	13.3	14.0				21.8	28.9	33.2
46대	9.8	10.3	12.3	12.3	16.3	17.1	16.6	19.5	24.0	31.8	36.5	43.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육성정책의 결과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20대재벌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7.1%에서 78년 14%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73년 9.8%에서 81년 24.0%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73년 31.8%에서 78년 43.0%로 상승했다. 삼성과 럭키재벌에 비하여 현대와 대우는 이 시기에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급성장한 대표적 재벌이었다.

5)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농산물가격

박정권의 노동자 억압은 고도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노조의 설립이 신고주의로 바뀌었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공무원 교사등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었다. 쟁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70년대 초반에는 반노동자적인 법률들을 집중적으로 제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함으로써 저임금 체제를 뒷받침하여 자본축적을 지원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년)에 의해 외자기업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년)을 제정하였고, 7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개악하였으며, 74년에는 긴급조치 3호와 더불어 다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였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부가 개입하여 1970-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에 불과했다. 상당수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60시간 이상이었고,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저농산물가격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80%선에 머물렀다. 이러한 농촌의 피해에 대응하여 강구한 대책이 신상품도입에 의한 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이다. 통일벼 도입으로 70년대 후반에는 쌀을 거의 자급할 수 있게 되었고 춘궁질량농가는 거의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관련산업에 진출한 해외자본은 큰 이익을 남겼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반에 있었던 남북한 대화에 대비해 강행

되었다. 60년대말, 70년대초까지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해 우세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농민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여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과 동시에 당시 과잉생산되고 있었던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을 겨냥했다. 새마을운동 구호인 「근면, 자조, 협동」에서 드러나듯이 농촌낙후의 원인을 정부의 농업경시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에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은 독점자본의 농업 농촌 농민지배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발전주의이데올로기를 농촌지역에 확산시키기도 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부채누적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농민들의 자치, 협동동력을 약화시키고, 관에 지배되도록 했다.

3.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의 성과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은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한국경제는 1961-80년간 년평균 8.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국민총생산은 약 4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81년에는 791달러로 거의 10배 늘어났다. 수출은 4천만달러에서 약 210억달러로 늘어났다. 경제성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북한경제를 능가하게 되었다.

급속한 공업화로 산업구조도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되어 국민총생산중 농업부문 비중은 1955년 43.9%에서 83년 14.0%로 저하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4%에서 28%로 상승하였다. 또한 공업구조도 70년대초까지 경공업 중심에서 70년대후반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선진국에서 1백년 이상에 걸쳐서 달성된 것을 20-30년간의 짧은 기간내에 공업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체제의 뒷받침에 의한 초과착취적 고도성장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재체제(재벌체제)의 경직성은 재벌체제의 심화, 투기의 악화, 부정부패의 만연 등 자본주의적 모순을 급속히 심화시켰다. 국가보안법체제와 유신독재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력을 봉쇄하고 권력제일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극한적으로 관철시켰다.

국가의 경제통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관료의 무능과 복잡한 절차,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패 등도 경제통제의 부작용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입제한은 재벌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가격통제는 일부 산업에서는 관제카르텔 기능을 하기도 했다. 수입통제도 국내산업의 과보호로 기업체질을 약화시켜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에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노동운동 통제는 기업경영에서 소유자본가의 전횡과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창의성 억압, 생산적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군사독재정권은 단기적 성장에 급급한 결과 단기에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킨 것이다.¹⁵⁾

15) 정치군부의 악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이 정도로라도 발전해온 것은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민주인사들의 고난에 찬 저항 덕분일 것이다.

<표 7>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단위 : %)

연도	1955	1965	1970	1975	1980	1983
산업부문						
1. 1차산업						
1.농림어업	43.9	37.6	26.4	24.7	14.4	14.0
2. 2차산업	15.5	23.3	27.5	32.3	38.7	37.9
2.광업	1.1	2.0	1.4	1.5	1.4	1.4
3.건설업	3.0	3.4	5.3	4.8	8.5	8.5
4.제조업	11.4	17.9	20.8	26.0	28.8	28.0
3. 3차산업	40.6	39.1	46.1	43.0	46.9	4.8
5.전기·가스·수도업	0.5	1.3	1.6	1.3	2.0	2.3
6.도소매·음식 숙박업	15.5	16.9	18.0	19.5	17.0	17.0
7.운수·창고·통신업	2.5	4.0	6.6	6.0	7.7	8.7
8.금융·보험·부동산업	1.0	1.9	3.6	3.9	6.5	5.4
9.주택소유	7.8	3.5	3.0	2.4	2.8	2.9
10.공공행정 및 국방	5.6	4.9	4.8	3.8	4.4	4.6
11.사회 및 개인서비스	6.5	5.7	8.1	7.5	8.2	9.2
해외부문	1.2	0.9	0.4	-1.4	-1.7	-2.0
합계(=GN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10억원)	114.5	805.7	2,735.9	10,092.2	37,205.0	58,279.7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 1984

4. 국가보안법체제와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

1. 신자유주의로의 조기전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내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과잉중복투자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국내수요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여기에 국외적으로도 제 2차 석유위기로 수출이 둔화되는 등 내외적 요인이 겹쳐서 경기침체를 겪는다. 이에 따라 외채누적, 부실기업 등 경제위기가 심화된다. 1981년에 중화학공업의 가동률은 제조업평균 가동률 88.7%에 훨씬 못미치는 50-60%에 불과하였고, 전체 중화학공업체 가운데 적자기업이 45%, 적자규모는 2,600억원에 달했다. 1979년에 들어와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정에서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산마산항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했다. 유신체제의 붕괴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지배세력내의 분열에 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은 초과착취적, 종속적 자본축적의 내재적 모순과 이것과 연관된 유신체제의 모순, 그 결과로서 민중의 저항에 있었다.

위기에 처한 한국자본주의하에서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로의 조기 전환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모델로의 전환은 8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에 본격화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내부적인 계급역학관계를 보면 국가권력

을 장악한 신군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는데 정책기조는 대외 경제개방 확대와 경제안정화였다. 재벌은 이미 성장하여 국가의 직접적 보호육성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간섭과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부담을 벗어나려고 하여 시장기능 중시, 정부규제 완화, 민간주도경제를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재벌들은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제기된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탈규제화론을 동원하여 한국경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 완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조차도 도입을 반대하거나 도입되어 있는 미약한 규제도 철폐하려고 한다. 국제적인 치열한 경쟁 앞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주체는 재벌이 가장 적임자이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노동시장을 자본시장과 유연화하여 임금을 억제하고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국가보안법체제로 정치적 세력화가 봉쇄당한데다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응하는 국가의 케인주의적 개입을 강제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외압으로서 선진국 독점자본이 70년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으로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금융자본화를 추구하고, 이것은 개도국의 대내외적 개방과 자유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중수탈의 심화

5공화국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안정화정책을 폈는데 그 내용은 독점대자본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특혜적 지원과 민중수탈의 심화였다. 우선 국가개입에 의해 중화학투자조정이 시도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78개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총 19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지원되었다. 이들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막대한 특혜와 함께 독점재벌들에게 인수됨으로써 특정재벌이 해당업종별로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공업발전법(1986년) 제정을 통하여 구조불황, 사양산업의 합리화(시설 설비합리화와 기술개발촉진), 성장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의 3 측면으로 구성되는 산업구조조정이 성장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초점이 두어지면서 이루어졌다. 성장 성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의 내용은 하청계열화, 부품 소재 및 기계류 국산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등이었고,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정부의 직접 기술개발제공(특정연구개발사업 등)과 사적 자본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세계금융상의 지원등의 공급측면의 역할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점자본은 이제 국가의 직접적 육성이 없이도 간접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사적 독점자본의 경제력을 강화시켜준 것이었다. 이러한 독점자본의 힘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 시기에 와서 국가와 사적 독점자본간의 관계도 일정한 정도 변화한다. 명령적 계획에서 후퇴하여 지침만을 제공하는 지시적 계획으로 전환했고, 직접적 산업특정적 지원에서 간접적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이 나타났다.

재벌들은 규제완화나 철폐를 외치면서 정부개입이 기업활동을 방해한다고만 하지 이제까지 재벌들이 누려왔던 특혜구조의 철폐까지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정부간섭 배제를 주장하던 재벌들도 최근의 대기업 부도사태와 외환위기에 직면하여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호적 기업인수합병은 무방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시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장이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

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시장기능의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이다. 1996년말의 노동법 안기부 법 개악과동은 기득권세력의 수구적 행태를 잘 보여주었다. 신고주의 등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방해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계속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1) 노동문제의 심화

5공화국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방법의 일환으로 동원된 것은 임금동결, 수매가동결로 노동자,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90년대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는 강화되었다. 임금인상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이라는 자본가들의 주장이 있지만 1970년에 비해 1990년의 실질임금은 4배 정도 상승했는데 노동생산성 지수는 7배나 올랐다. 직종별, 학력별, 남녀별 임금격차는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고학력자의 과잉 등으로 꾸준히 축소되어왔지만 1995년 현재 아직도 고졸/대졸=0.64, 여자/남자=0.60, 생산직/전문관리기술직=0.65로 선진국들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심화되었다. 상용근로자 30-99인 기업과 500인 이상 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85년에 9.6%에 그쳤으나 90년에는 29.5%로 높아졌고 95년 36.4%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직종별 대우의 실질적 격차를 확대하는 작용을 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의 22%,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크기만을 추정해보면 정부재정 중 사업비 지출의 10-20%는 다양한 경로의 음성수입으로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며, 이것은 전체공무원 인건비의 1/4 - 1/2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탈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뇌물수수, 소방 건설 경찰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을 모두 합하면 거액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규모는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율이 2-4%에 불과하고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12-13%인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여기에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질병인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실업률은 1980년대의 2-3%에 비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자본의 과잉축적의 영향으로 1.8-2.0%로 낮아졌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불황으로 인해 1995년 2/4분기의 2.0%에서 97년 2/4분기 2.6%로 상승했다. 실질적인 실업자인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까지 합치면 3.3%에서 4.1%(36시간 미만 취업자까지 합치면 7.3%에서 9.2%)로 상승했다. 취업내용도 불안정해져서 통계청의 97년 2/4분기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95년 24분기의 41.7%에서 96년 2분기 43.3%, 97년 2분기에는 45.5%로 상승했다.

1990년대에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는 노동운동 역량의 강화를 반영한 민주노총의 합법화 등의 면에서 전진적 요소가 있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위축되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강행하였고,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종전에 없던 것으로서 노동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1997년 2월의 신노동법은 복수노조 허용, 3자개입 허용, 노조정치활동 허용 등 조합활동에 유리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차원이고 실질적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쟁의행위 대상의 축소, 대체근로 허용, 노사협의회 권한의 확대 등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게 되었다. 신노동법은 또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하였는데 이것은 1990년대에 다수 기업에서 추진되어온 신경영전략에 의한 능

력주의적 인사관리, 직능급,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90년대에 노동자계급은 통제경제체제의 존속에 따른 억압,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제반 보호의 결여에 의한 억압,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의한 억압 등 역사적 성격이 다른 삼중의 억압에 시달리게 되었다.

2) 농산물시장개방과 농업의 피해

저농산물가격 실현의 주요방법은 추곡수매가 동결과 외국농산물도입이었다. 쌀수매가 동결로 입은 피해액은 직간접 피해를 합쳐서 1981-85년간에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당시 농가부채 누적의 주요 원인이었다. 3저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80년대 중반 이후 호황을 맞이한 한국자본주의는 무역수지 흑자까지 실현하였다. 수출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선진국 수입규제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입개방을 확대하였고, 이것이 농산물이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수입되어 농업생산을 전반적으로 억압한 주요 요인이 된다.

90년대에 들어와 농산물수입개방 확대, 상충농 중심의 농업구조개선 등 신농정은 국제수지 적자확대로 외환위기 초래에 일조했다. 농림수산물 수입은 1988년의 수입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나서 90년대에 들어오면 매년 10억달러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수출입분야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도 1985년 10억달러 수준에서 1990년 29억달러, 1993년 50억달러, 1996년 85억달러로 급증하였다(표 7)

<표 7>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추이(백만달러,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 출	1,930	1,543	2,920	2,986	2,886	2,760	3,049	3,469	3,464
수 입	3,164	2,511	5,789	6,923	7,147	7,811	8,716	10,520	12,021
무역수지	-1,234	-968	-2,869	-3,937	-4,259	-5,051	-5,667	-7,051	-8,557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7.

양곡생산량은 1990년 701만톤에서 1996년 550만톤으로 줄어든 대신 양곡도입량은 1985년 733만톤에서 1990년 1,002만톤, 1996년에는 1,428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양곡을 도입하게 되었다. 1인당 양곡소비량이 1985년 181.7kg에서 96년 160kg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식량자급률은 1980년 56%에서 1990년 43.1%로, 다시 1996년에는 26.7%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식량 자급율도 1990년 70.3%에서 1993년 61.3%, 1996년 52.4%로 급격히 내려갔다. 쌀자급도도 1991년 102.3%에서 1992년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여, 1996년에는 89.5%로까지 저하했다.

3. 시장경제 강화와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

1) 재벌체제의 강화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다. 여신관리정책에서는 1993년 2월에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을 50대재벌에서 30대재벌로 축소하고 자구노력의무비율을 100-600%에서 100-200%로 하향조정하고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후신고제를 도입하여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듯했지만 규제완화와 예외조치로 인해 재벌의 차입의존 경영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받자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업종전문화정책으로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규제를 면제해주었다. 이에 따라 주력기업 대출, 특별외화대출, 산업합리화 대출 등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 중 30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40.2%에서 95년 59.1%로 높아졌다. 세계화정책으로 기업의 해외차입을 허용하면서 여신관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노태우정부하에서는 주력기업의 선정을 재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재벌들은 주력업종을 망라적으로 선택하였고,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로 중복과잉투자는 심화되었다. 김영삼정권하에서 업종전문화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에 대해 여신한도와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풀어주고 해외금융조달, 회사채 발행등에 우대조치를 해주었다. 주요재벌들은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정보통신, 금융 등 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과잉중복투자를 촉진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는 심화되었다. 30대 재벌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2.5%, 90년 13.0%, 94년 14.2%, 95년 16.2%로 계속 높아졌다. 제조업부문에서는 30대 재벌이 전체제조업 부가가치의 41.0%를 창출하였다. 1989년부터 96년까지 GNP는 2.6배가 되었는데 30대재벌의 매출액은 3.4배 규모로 성장했다. 30대재벌의 매출액과 GNP의 비율은 1989년의 71.7%에서 96년에는 92.1%로 올라갔다. 국민경제 속에서 재벌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1997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수는 819개로 90년 4월 562개보다 257개나 늘어났다. 그 가운데서 5대 재벌의 매출액이 30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64.2%에서 96년에는 67.3%로 높아져서 재벌들 속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8).

재벌의 금융에 대한 지배도 심화되었다. 은행에 대한 지배는 출자한도 상한선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지만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자금이용면에서 1996년말 현재 51대 재벌의 총차입금은 1백69조원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체 시중자금의 27.5%를 차지하고 있고, 4대재벌이 51대재벌 차입금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5대 그룹이 95년 상반기 중 유상증자,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모두 4조2천억원으로 전체 직접금융 12조1천억원의 34.6%에 해당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으로 재벌 자체가 거대한 내부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재벌산하 대기업들은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총수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 계열회사 지분율)은 '87년 4월 56.2%에서 '94년 4월 42.7%로 낮아졌으나 '95년 4월에는 43.3%, 96년 4월 44.1%로 다시 높아졌다. 그동안정부의 소유분산유도정책이 기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주식소유를 바탕으로 재벌총수와 일족들은 비서실, 기획조정실 등 그룹 총괄운영조직을 두고 계열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표 8> 30대 재벌의 경제지배 현황

(단위:10억원)

그룹명	계열업체수(개)		매출액					증가율(%) 1989-96
	1990.4	1997.4	1989	1993	1994	1995	1996	
1 현대	39	57	17,284	39,031	47,001	59,068	69,798	403.8
2 삼성	45	80	21,894	43,088	51,830	63,781	75,605	345.3
3 엘지	58	49	13,304	24,981	29,570	41,618	48,635	365.6
4 대우	27	30	9,523	20,779	20,557	29,413	38,620	405.5
5 선경	24	46	6,048	12,792	14,657	17,402	26,797	443.1
현대 + 삼성(A)	84	137	39,178	82,119	98,831	122,849	145,403	371.1
5대재벌합계(B)	193	262	68,053	140,671	163,615	211,282	259,455	381.3
30대재벌합계(C)	562	819	106,009	212,165	248,959	317,526	385,022	363.2
국민총생산(E)			147,941	265,518	303,773	348,284	386,640	261.3
A/C (%)			36.9	38.7	39.7	38.7	37.8	
B/C (%)			64.2	66.0	65.7	66.5	67.4	
C/E (%)			71.7	79.9	82.0	91.2	99.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각년도 자료.
한국은행, 「1996년 국민계정」, 1997. 3.

재벌의 경제지배 심화는 경제구조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가. 첫째, 재벌체제는 과도한 다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했다. 재벌기업들은 독점이윤을 겨냥하여 사업확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한 부문에서 실패해도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독과점이윤으로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계열사간 출자와 상호채무보증이라는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총수지분에 대해 외부주주의 자금 또는 부채조달 규모도 증가하므로 총수는 경영지배권을 유지한 채로 자본동원을 늘릴 수 있다. 소유가 집중될수록 더욱 다각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기회가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던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비관련 다각화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였지만 기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제품차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해진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차입 확대에 의한 과도한 다각화는 기업경영에 불리하게 되었다.

둘째, 총수중심 경영체제로는 세계적 경쟁 강화 속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총수의 의지와 정경유착에 의한 경영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재벌은 족벌체제로 총수의 직계 가족을 핵심경영진으로 포진시키는데 이것은 젊은 경영층의 경험부족으로 경영불안을 초래하기 쉽고, 기업의 발전과 재벌일족의 지배권 유지욕구가 충돌될 경우 경영권 장악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기아는 전문경영의 대기업인데 재벌에 비해 허약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나 기아그룹의 도산은 국민기업적 요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비관련 다각화와 과다차입, 과잉투자 등 재벌의 부정적 행태를 흉내내어 취약한 경영상태였던 데다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재벌의 자금회수공격에 직면하여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벌체제는 중소기업 경영을 악화시켰다. 정부 중소기업정책은 1989년 3월 제정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중심을 두었던 데 비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자생력 배양으로 중점이 옮겨졌다. 김영삼정권하에서는 1994년 9월 16일에 "중소기업지원책은 마약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은 1990년대에 들어 불안정해지고 대기업과의 생산성격차는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체계의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 생산성은 1988년 대기업의 53.9%에서 1990년 49.3%, 1993년에는 45.7%로 계속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1980년대에는 1985년에 3.05%(대기업 2.32%) 등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90년대에는 대기업보다 낮아졌고, 1995년에는 1.49%로 대기업의 4.40%에 크게 뒤떨어졌다. 다만 1996년에는 불황의 여파로 과잉투자를 누적해온 대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저하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 잦은 도산에는 납품대금의 장기간 어음 발행, 친인척 회사제품 우선구매 등 재벌의 지배와 횡포가 크게 작용했다.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20개 대기업의 1995년 상반기 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는 금액기준으로 어음지급이 73.1%로서 주종을 이뤘고, 현금지급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어음결제도 납품대금지급이 법정기일인 60일 이내에 이뤄진 것이 52.6%에 불과했다. 1989년 30대 재벌의 총매출액의 23.7%가 계열기업간 거래로 나타났는데 96년에는 26.4%로 높아졌다.

1990년대에 와서 재벌의 지배로 독립중소기업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홍장표 교수는 자동차산업 대기업 하도급체계의 특징은 협력과 공존보다는 제재와 통제가 중시된 전속거래와 단층적 분업구조, 핵심기능부품과 A/S용 부품의 유통조직 등 고수익부문을 직접 장악하는 계열사 관계사거래인데 이것은 자동차부품시장의 독점지대와 동족이익을 추구하는 재벌대기업의 행위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94년 현재 자동차 부품 납품액 상위 10사중 7개사, 상위 30사 중 15개사가 자동차 5사의 계열사와 관계사(조립기업 창업주나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소유 경영하는 기업)이며, 계열사와 관계사의 평균납품액은 784억원으로 독립계 중소기업의 20배에 이른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식 거래체제와 관리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복수회사 발주, 서열경쟁, 정례화된 단가인하 등의 합리화 부담을 하위부문으로 전가하면서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변화로 조립대기업이 부품 중소기업에 자본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력을 높이는데 작용했다.

중소기업의 대거 도산에 당황한 김영삼정부는 1995년 12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1996년 2월 12일에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확대는 부품 소재산업의 미발달을 초래하여 한국경제의 저능률구조를 심화시켰다. 이것은 한국산업구조의 기술집약,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였고, 대만과 한국간의 경제적 성취를 차이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재벌체제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독과점체제는 경제불황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불황을 겪으면서 독점체제는 강화된다. 거대기업들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신용을 동원하여 과잉생산능력을 확대시키고, 거대 자본들이 파산하면 공황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기간을 길게 한다. 한국에서도 재벌체제로 인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부문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가 현재의 불황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불황하에서도 재고가 급속히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 채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의 지배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보와 기아의 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재벌기업의 도산은 경제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다섯째,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을 구조화시켰다. 사업확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벌들은 새로운 사업의 인허가, 특혜적인 자금의 조달 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권력과 결탁했다. 재벌 체제하에서는 총수의 비자금 조성 요구를 제어할 힘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리는 정도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김대정부의 주도에 의한 정책적인 재벌개혁노력을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세력의 음모로 몰아부쳤다.

2) 토지가격의 과다한 상승

1980년대말에 지가가 폭등하여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토지주택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개발연구원이 1995년 1월 현재 공시지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총지가는 GNP(94년)의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기준으로 미국의 지가총액은 GNP의 0.6배, 영국이 2배 정도이다. 땅값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1988년에 4.8배로 정점이었고, 그후 거품이 붕괴되어 현재 3.5배 수준인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다. 지가도 수도권이 비싸서 서울의 평균 땅값은 제곱미터당 100만원(평당 329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60배에 이른다. 토지소유도 극도로 편중되어서 1993년 현재 상위 1%가 27.9%의 토지를, 상위 5%가 50.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문제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즉 투기가 번창하고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하게 강함을 의미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힘에 비해 토지주택이용자의 권리가 너무나 미약하다.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항하여 적절한 임대료만 계속 지불하면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장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계약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제한이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배경으로 한 사유재산절대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80년대말의 주택200만호 건설 등 자가소유를 촉진한 주택정책이 토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이 부동산의 실질이용 수요에 더하여 담보용 확보라는 추가수요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다.

높은 지가는 주거비 상승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두드러졌던 임금인상도 지가 앙등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과 전세금 상승 때문이다. 94년도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주거비와 자가평가액을 합한 금액은 소비지출액의 21.9%를 차지하여 외국 도시가구의 주거비가 대체로 소비지출의 7-13%인 것에 비하면 무거운 부담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자의 증가를 촉진한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했다. 또한 토지소유에 따른 고수익과 지가상승은 고금리의 요인이 되었다. 자산운용에서 부동산투자에 치중함으로써 대체관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축적이 저해되었기 때문이다. 95년 현재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잔액/GNP)은 5.25으로 대만(92년 5.68)보다 낮았다.

국가도 총자본의 입장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 토지투기 억제정책을 폈지만 토지소유자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지만 종중(宗中) 재산 및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고,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돼 있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토지구묘에 관계없이 유예기간에 업무용으로 실명화하면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의 공공적 부문에서도 사유재산절대주의를 조장하였다. 병원, 학교, 변호업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인데도 사립학교 설립자와 병원경영자는 병원과 학교를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무엇인가'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한 국가보안법의 효과이다. 언론기관이 집권세력이나 특정재벌 및 족벌의 사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데도 국가보안법은 기여했다. 사유재산 절대주의의 영향이다.

4. 대외 개방의 확대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하면서 외국자본의 합리성으로 국내 경제의 비합리성을 시정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금융자본의 움직임에 취약한 경제로 전락시켰다.

1980년대의 새로운 국제분업질서 수립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62-89년간 50억달러의 직접투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36억달러가 80-89년에 이루어졌다. 특히 84년에 외국인투자 허용방식이 '허용업종 예시제도'(예시업종 이외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규제가 강한 것임)에서 '불허업종 예시제도'(이외는 모두 허용되는 것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로 바뀐 뒤인 80년대 후반기 1986-89년간에 28억 달러가 직접투자되었다. 자체 기술축적 수준이 낮은 재벌기업은 외국인투자의 홍수 속에서 앞장서서 선진국 독점자본과의 합작을 시도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자본자유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한미 금융정책협약의 결과 1993년 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이 마련되었고, 1994년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이 마련되었으며 1996년 9월에는 OECD 가입과정에서 2000년까지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개방계획이 마련되어 자본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자본유입면에서는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이나 차관 및 무역신용도입 등 외자조달에 대한 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자본유출면에서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업종을 완화하다가 폐지했고, 신고투자대상도 확대하다가 97년 8월부터는 신고만으로 단일화했다. 1992년 증권시장 개방이래 주식투자 자금유입액을 보면 93년 76억달러, 94년 85억달러, 95년 102억달러, 96년 124억달러(순유입액 44.5억달러)로 꾸준히 늘어났고, 92-96년 누계로 보면 총유입액이 416억달러, 주식매각에 의한 해외송금유출액이 250억달러로 순유입액 누계는 166억달러에 이른다. 자본의 순유입 증가는 자본수지의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관리와 환율의 안정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그로 인해 환율의 고평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7년에 들어와 외국인 주식순매도가 8월 952억원, 9월 2983억원, 10월 3928억원 등으로 급증했고, 이 자금은 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환율을 급등시켰다. 이렇게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한국의 경제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적 투기자본의 이동이 한국경제위기를 격화시키고 외환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에 들어와 침체되고 있으며,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행액은 96년말 현재 176억7천만달러(인가.신고수리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급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1993년 이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다. 이것은 외국자본이 한국을 제조업의 유리한 투자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위축, 특히 제조업부문 투자 부

진은 한국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이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한국자본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는 93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하기 시작하여 허가기준으로 18억7천만달러로 늘어났고 95년에는 49억달러에 달했다. 96년에 허가된 해외투자는 61억7천만달러로 96년말 해외투자잔액은 137억7천만달러에 이른다

<표 9>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달러)

	허가		투자		투자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0	515	1,611	338	955	1,226	2,298
1991	527	1,511	443	1,115	1,646	3,325
1992	632	1,210	497	1,218	2,109	4,422
1993	1,050	1,872	682	1,256	2,726	5,432
1994	1,947	3,587	1,475	2,305	4,133	7,477
1995	1,561	4,914	1,285	3,059	5,326	10,225
1996	1,769	6,167	1,406	4,188	6,666	13,766

자료 : 한국은행, 「1997년 2월 해외투자현황」, 1997. 4.

해외투자 확대의 주역은 재벌대기업이다. 현대와 삼성, LG재벌의 96년 해외투자 집행분은 각각 1조원에 달하고 대우는 1조5천억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했다. 삼성과 현대는 2000년까지 총 100억달러를 해외투자에 배정했고, LG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만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150억달러에 달한다. 대우는 국내 보다는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선경그룹도 앞으로 10년간 35억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5대재벌의 향후 10년간 총해외투자계획은 70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기업은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체로 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송금이나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1994년말 현재 해외투자사업(3천만달러 이상)의 부채비율은 722%로 국내 제조업 평균(302.5%) 보다 크게 높으며 정부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해외투자사업(1억달러 이상)의 부채비율도 360%(95년)에 달하였다.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 증가율은 국내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투자의 동기는 우선 국내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동남아에 대한 투자는 이 범주에 속한다. 다음으로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외국기술획득을 위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이런 성격이다. 한국의 대미투자는 첨단기술 습득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톱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이 최근 인수한 미국내 유명브랜드 회사의 경영정상화 전망은 불투명하고 적자만 지속되고 있다.

5. 계층간 격차심화와 환경파괴, 인명경시의 위험사회

1) 과도한 교육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권리 억압으로 직접생산에 종사하는 민중들의 지위가 낮게 유지되자 누구나 출세주의로 나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했다. 그 결과 한국은 인구비율로 대학생수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 모습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율은 1980년 27.2%에서 1995년 51.4%로 급격히 늘어났다. 재수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입학율은 80년 43.3%, 95년 74.2%로 높아졌다. 결국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 4명중 3명(1명은 재수)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1998년말 현재 대학생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생수 148만여명, 교육대학이 2만명, 전문대학 80만명, 방송통신대학 31만명, 산업대학 12만명, 대학원 18만명으로 고등교육 학생수는 총계 295만명에 달한다. 80년 53만명, 90년 169만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80년 140명에서 98년 현재 635명(4년제 일반대학생은 300명)수준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가 200명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과잉으로 대학교육의 질은 저하되었다. 교사 1인당 초중고 학생수는 23명 수준인데 전임교수 1인당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수는 34명(방송대와 전문대 포함시 50명)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10명 내외이며, 대만도 13.5명이다. 대학진학열풍으로 최근에는 학원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주름살이 더해졌다. '세계화 = 영어능력 제고' 라는 식으로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영어 과외열풍이 대부분의 가정을 휩쓸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생산직근로자까지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교육개발원의 추정에 의하면 '94년 현재 사교육비 부담은 17조5천억원에 달해 공교육비 16조7천억원보다 많다. 40세 전후로 두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월급의 20-30%를 사교육비로 쓴다.

2) 남녀성비 불균형 심화

여아 100명당 남아출생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가 최근 들어 계속 높아져 85년 109.5, 88년 113.4, 94년에는 115.6으로 증가추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출생성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경북이 124.3, 대구가 121.3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110으로 가장 낮다. 이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체제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체제 하에서 안기부 등 이면실력자로 행세하면서 권력남용의 맛에 크게 오염되어 남자의 기대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아낙태의 행태는 남녀간 격차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대응방식이며, 의사들조차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인명 살상이라는 범죄적 행위를 자행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2010년경부터 결혼적령기 남녀성비 불균형 심화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중독, 자살,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남녀성비 불균형의 부작용은 100년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3) 안전사고 빈발

최근 성수대교 붕괴(94. 10.21),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94. 12. 7),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95. 4. 28), 삼풍백화점 붕괴(95. 6. 29), 99년에 들어와 씨랜드 화재에 의한 유치원생

대량사망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와 고교생 대량사망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았다. 이런 대형사고 빈발은 60년대 이래 양적 경제성장에만 급급한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해온 탓이며, 동시에 기업윤리 부재와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부실공사의 필연적 결과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은 황금만능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교통사고 역시 국가보안법이 조장한 황금만능주의의 결과이다. 1994년에 교통사고 부상자 35만8백92명, 사망자 1만87명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연간 6조4천원으로 GN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사망율은 일본의 8.5배에 달한다. 교통사고 후유장애자는 한 해 평균 2만5천명 정도 발생하는데 그들의 절반 가량은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이혼 한 사람이 12%, 자살기도한 사람이 41%나 된다. 교통사고 장애자들은 완전히 무용지물,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차와 사람간의 사고가 사망사고건수의 50%를 차지하는데 이것 역시 사람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천민자본주의의 결과이다.

4) 환경문제 심화

남해안의 적조와 기름유출 사건 빈발, 안전한 식수공급 위협, 대도시 대기오염, 쓰레기의 위생처리, 산림의 훼손 등 원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국민들은 생활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시설설치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완벽한 시설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쓰레기처리장 설치 등을 서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모순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은 성장제일주의와 자본주의적인 황금만능주의가 초래한 억압과 불균형이 극단에 달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사회적 모순들은 우리 사회가 노골적인 양육강식의 세계,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경제위기 초래

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자본주의적 모순, 즉 독점과 공황, 대량실업문제를 심화시켰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구래의 국가주도 초과착취적 압축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과도기적 접합의 결과, 누적된 모순이 규제되지 않은 채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의 심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악화에 따른 과잉투자/과잉생산의 격화, 금융기관의 신용조절 능력 약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추진, 자본운동의 범지구화와 투기적 금융자본의 팽창과 그 영향을 증폭시킨 과도한 자본자유화 등이 그것이다.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의 주요 산물인 재벌이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힘입어 과다차입, 과잉투자, 문어발확장에 돌진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재벌은 가족적 지배하에 있는 복합대기업(conglomerates)의 독점자본으로서 투자결정이 재벌총수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외형위주의 무모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재벌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밀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것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외국자본의 대출연장과 추가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관치금융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정책 도입으로 정부의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기능이 취약해진 것도 과잉축적을 촉진하여 외환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소유에 있거나 정부가 통제하에 있어서 대출심사기능, 사후감시(monitoring)기능, 부실기업 처리기능 등이 취약했다.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구제금융을 늘림으로써 부실을 누적시켜왔고, 이것은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규제기능 마비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환율을 고정시키고 이자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단기저리 외자도입을 촉진했고,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사후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위험대출의 위험을 높였다.

국제적인 투기적 외환거래와 동남아시아 각국과 한국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도 외환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는 금융적 투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작고 최대의 투기는 외환시장에서 전개된다. 하루 외환거래액은 1973년 150억달러에서 1992년 4월에 8800억달러로 늘어났고 1995년 3월에는 1조290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무역거래를 위한 것은 10%미만이다.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은 1990년 500억달러에서 1996년 336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급격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것도 외환위기의 위험을 증폭시켰다.

5. 맺음말

1960-7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체제와 부정부패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으나 그 악영향이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서 표면적으로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방화와 자유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누적된 모순이 표면화되었고, 그 결과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공황과 실업의 반복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계속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설정한 한국의 빈곤율은 97년 8.6%에서 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또 올 1/4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4천원)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 1426만여 가구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 98년 17.2%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빈민의 수도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기준 빈곤율은 97년 4분기의 3.0%에서 98년 1분기 6.9%, 2분기 7.2%, 3분기 7.8%(365만명)로 계속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자체 연구에서 드러난 빈곤층 365만명의 53%인 192만명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173만명 가운데 25-35%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65-75%는 생활보호 신청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적 모순의 전형인 빈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체제 속에서 남북간의 대결 구조가 유지되고 국방비가 국민총생산의 3%, 정부예산의 20%에 달하는 것은 경제공황하에서 늘어나는 실업자와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농어민 등을 보호하는데 쓰일 국민의 복지예산을 축소시킨다. 또 경제문제 해결의 바탕이 되는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정당의 성장이 억압되어왔기 때문에 보수정당들이 도전과 경쟁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치개혁과 복지지출의 증대를 위해 한국전쟁의 50년된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89.
김성두, 『재벌과 빈곤』, 백경문화사, 1965.
김준보, 『한국자본주의사연구 2』, 일조각, 1970.
_____, 『한국자본주의사연구 3』, 일조각, 1977.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 3,4,5집, 1988, 1989, 1990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989
_____,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_____, 『국가보안법 연구 3 - 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 1993.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1994.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1998.
서남원, 『외국원조의 이론과 실제』, 한국연구원, 1963.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1991.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계급』, 나남, 1991.
손호철,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호철, 『해방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안림, 『동란후의 한국경제』, 백영사, 1954.
양희수,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元容爽, 『戰亂下의 農業經濟』, 三協文化社, 1953.
劉鎮舜, 『農家經濟와 인플레이션』, 文學社, 1967.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1987.
이만갑, 『한국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이해주, 『한국경제발전론-한일비교경제사적 접근』,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90.
한기해, 『국가보안법 - 그 흐름과 폐지의 방향』, 공동체, 1989.
홍근수목사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 한울, 1991.
홍성유,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한국사회연구소,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서당, 1989.

<논문>

- 고성국,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정당 운동사”,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서당, 1989.
공제욱, “1950년대 한국자본가계급의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권병택,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농업정책연구』 제11권 1호, 1984.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_____,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한울

김병태, "머슴에 대한 연구(1, 2)", 『경제학연구』 제 4, 5집, 한국경제학회, 1956, 1957.

김수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한국과 미국 2 - 경제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김양화, "미국의 대한원조와 한국의 경제구조", 『해방40년의 재인식 1』, 돌베개, 1985.

_____,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서평-", 『경제사학』 제11호, 1987.

_____, "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_____, "1950년대의 사회경제구조",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_____, "1950년대의 경제협정", 『역사비평』 17호, 1992년 여름, 1992.

_____, "1950년대 공업화(및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동향 검토", 『무역평론』 제2집, 경성대무역연구소, 1995.

김영규,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 12(『민교협 월보』 제31호, 1997. 3월호에 게재)

김재훈, "1950년대 미국의 한국원조와 한국의 재정금융", 『경제와 사회』 창간호, 까치, 1988.

김종덕, "미국의 대한 농산물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진현, "부정축적처리전말서", 신동아 1964년 12월, 1964.

노중기, "1950년대 한국사회에 미친 원조의 영향에 관한 고찰", 『현대한국의 자본축적과 민중생활』, 문학과 지성사, 1989.

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박을용, "제2차대전이후의 한미 경제관계", 구영록의, 『한국과 미국』, 박영사, 1983.

박진도,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한국 행정문화의 형성과 성격』,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1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박찬일, "미국의 경제원조의 성격과 그 경제적 귀결", 김윤환 의,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박현채, "한국전쟁과 한국경제의 전개", 『현대사회』 제36호, 1990.

배인철, "1950년대 경제정책과 자본축적", 『한국사』 18, 한길사, 1994.

서준식,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민교협 월보』 제31호, 1997. 3월호에 게재)

서찬수,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과정과 그 요인",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의 성과』, 형설출판사, 1989.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적 지형",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신병식,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윤명헌, "미국농산물원조의 경제적 영향", 『한국자본주의성격논쟁』, 대왕사, 1988.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1-6』, 기아경제연구소, 1995-7.

이명휘, "1950년대 농가경제 분석", 『경제사학』 제16호, 1992.

이병천,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과정",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

이상철, "한국메리아쓰공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제민, "전후 세계체제와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한국경제 :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이중훈, "한국자본주의 형성의 특수성",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이창호, "국가보안법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 4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0.

_____,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 (『민교협 월보』 제31호, 1997. 3월호에 게재)

이현창,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역사적 배경", Working Paper No. 71,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7

이혜숙,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장상환,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해방40년의 재인식2』, 돌베개, 1985.

_____,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쟁점 한국근현대사』 제3호, 1993

_____, "한국전쟁기 진주지역의 사회변동", 『경상사학』 제12집, 경상대학교 사학회, 1996.

_____, "농지개혁에 의한 농촌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3), 지식산업사, 1997.

_____,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1999.

전용덕 김영용 경기화,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1977.

전철환, "4월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정일용, "6.25동란후 미국원조의 성격과 그 귀결", 『한국경제론』, 까치, 1987

정진상,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1994.

장중익, "1950년대 미잉여농산물원조가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장하진, "1950년대 한국사회구조에 관한 계급론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5.

최영목, "1950년대 한미관계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도약", 『역사와 현실』, 1998년 여름호.

한택근,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 12(『민교협 월보』 제31호, 1997. 3월호에 게재)

홍덕률, "4대재벌의 자본축적사", 『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민중생활』, 문학과 지성사, 1989.

高橋哲郎, "戰後 韓國經濟에 있어서의 原蓄過程에 관한 一考察- 1950年代 零細自作農收奪의 過程을 中心으로-", 『東京經濟大學論集』 제 6호, 1985.

_____, "韓國經濟原蓄期の 工業部門-戰後 韓國經濟에 있어서의 原蓄過程에 관한 一考察-", 『東京經濟大學論集』 제 7호, 1986.

谷浦孝雄, "韓國工業化における資本動員と企業經營", 『韓國工業化の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1

_____, "해방후 한국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鈴木義嗣, "195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과 공업화", 『한국경제의 구조』, 학민사, 1985.

渡邊利夫, 『現代韓國經濟分析』(김창남 역), 유평출판사, 1983.

梶村秀樹, "1960년대 한국의 지배구조와 예측자본", 『한국경제의 구조』, 학민사, 1985.

服部民夫編, 『韓國의 工業化-發展의 構圖』, アジア經濟研究所, 1987.

山田三郎 編, 『韓國工業化の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1.

小林英大, "低賃金構造の形成過程", 『韓國工業化の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1.

新納豊, "解放初期 南朝鮮における 經濟循環の 胎動", 『韓國經濟試論』, 白桃書店, 1984.

櫻井浩, "朝鮮戰爭の起源に 關する 一考察", 『アジア經濟』, 25-5.6, アジア經濟研究所, 1984.

_____, "1950年におけ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による 韓國地域の 土地改革", 『アジア經濟』, 29-1, アジア經濟研究所, 1988.

-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6.
- Amsden, A. H., 1990.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New Left Review*, No.182
- Cummings, B.,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8 No.1, Winter.
- _____, 1989. "The Abortive Abertura : South Korea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New Left Review*, No 173
- _____,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rden History*, Norton.
- Krugman, P. 1994. "The Mi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 Young, Alwyn, 1995.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 Young-Iob Chung, 1986. "Capital Accumulation of Zaibul in Korea During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제2차 국제 한국인 경제학자 학술대회 논문집』.

<기조발표>

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과 지킨 것

정영태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들어가는 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지난 12월 1일로 만 51년이 지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6월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견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통령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작년 10월말까지만 쳐더라도 311명이나 된다.¹⁾

만약,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50년 이상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많은 경우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잃은 것이 많았다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었을까?

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실로 많다. 그리고 그 손실은 주로 노동자나 농민 등 기층대중과, 이들을 위해 활동하거나 하려고 했던 진보세력 또는 민주세력에게 집중되었다는

- 1)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 동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를 비교해보면, 각각 67명, 301명으로,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보법 위반 구속자가 더 많았다.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마구잡이 구속이라는 면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8.12.6.